

주민참여형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 운영방안 연구



연구진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지속성 보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둠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주요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타 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사례조사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 비교분석
 -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등 운영사례별 장·단점 분석
 - 합리적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시설이용 기준, 사용료 등 표준적인 관리·운영 규정 마련
 -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방안 마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26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각 생활권별로 주민 입주 시기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함
 -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2개소가 건립 및 예정되어 있으며, 준공 8개소, 공사중 3개소, 설계 중 2개소, 사업예정 9개소임
- 시설운영으로는 준공 이전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준공 후 시설운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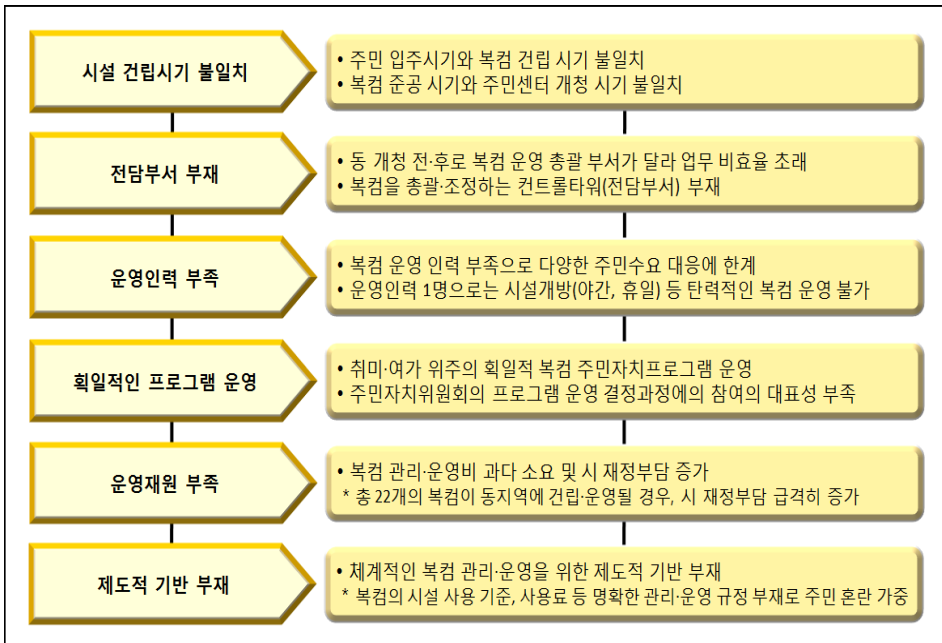
<표 1> 사업현황(2017년 11월 기준)

사업명		사업 기간	부지면적 (㎡)	연면적 (㎡)	총사업비 (억원)	비고
준 공 (8)	2-3생(한솔동)	'06~'12	52,539	51,946	1,006	지역복컴
	1-2생(아름동)	'08~'13	26,338	19,015	578	지역복컴
	1-4생(도담동)	'08~'13	11,158	11,951	358	
	1-5생(어진동)	'08~'13	14,982	13,461	382	
	1-3생(중촌동)	'09~'15	8,109	12,502	298	
	1-1생(A)(고운동)	'09~'16	8,057	11,793	301	
	3-2생(보람동)	'09~'16	15,395	17,460	492	지역복컴
	3-1생(대평동)	'09~'17	7,895	12,023	308	'17.10.10.준공
공 사 중 (3)	1-1생(B)(고운동)	'09~'18	8,243	12,075	321	'18.4.22.준공예정
	3-3생(소담동)	'14~'18	8,196	14,213	378	'18.3.22.준공예정
	2-2생(새롬동)	'14~'18	8,086	14,100	377	'18.3.16.준공예정
설 계 (2)	2-1생(다정동)	'16~'19	10,763	12,380	461	'19.5.준공예정
	4-1생(반곡동)	'16~'19	7,705	12,380	442	'19년 준공예정

※ 6-4(해밀리), 4-2(집현리), 2-4(나성동), 6-3(산울리), 5-1(합강리), 5-2(다솜리), 5-3(용호리), 6-1(누리리), 6-2(한별리) 등 9개소는 '17년 이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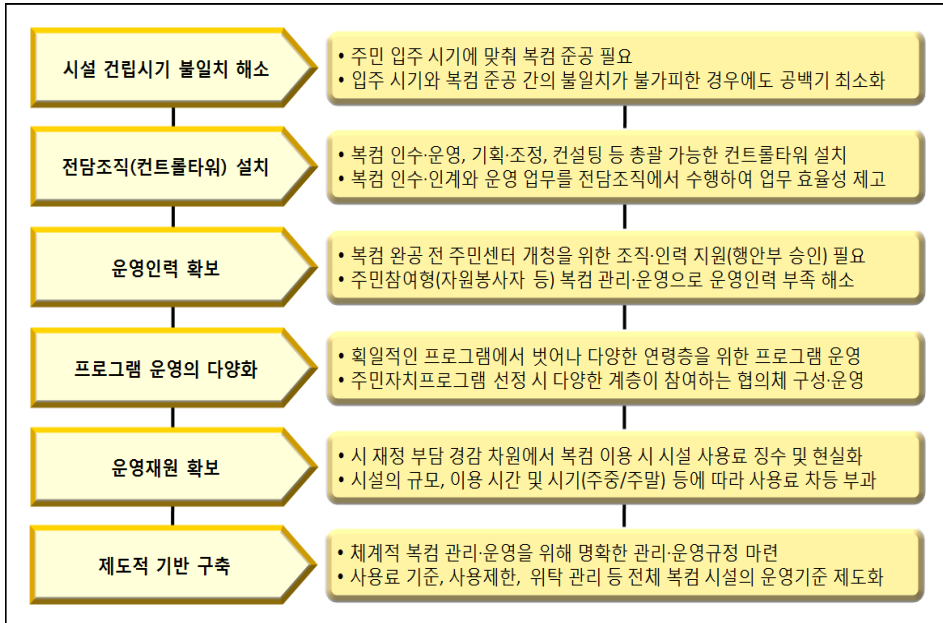
-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하면, 시설 건립 시기와 주민입주 시기 불일치, 전담부서 부재, 운영인력 부족,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원 부족, 제도적 기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문제점



-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시설 건립 시기 불일치 해소,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설치, 운영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운영재원 확보,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개선방안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방안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방식은 1차적으로 직영,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으로 구분한 후,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관리방식의 평가기준을 제시한 후 방안의 선택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 관리방식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법적 적합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공공성, 자율성, 전문성, 능률성, 통제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2차적으로 공단에 위탁할 경우, 시설관리와 운영을 통합할 것인지 또는 분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통합형 위탁방안과 분리형 위탁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통합형과 분리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복컴 운영의 수익성, 효율성, 전문성, 민주성, 대응성, 주민 만족도, 특수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3차적으로 분리형 위탁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단독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을 분리형으로 정하는 경우, 시설관리 부문만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방식 중에서 혼합형의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혼합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방안

-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의 참여, 복컴시설 관리 및 운영에의 참여, 복컴 추진 전 과정에의 참여로 구분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였음
-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의 참여는 복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인이나 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동,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검시설 관리 및 운영에의 참여 관점에서 볼 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복검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복검운영위원회는 동장 소속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복검 추진 전 과정에의 참여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디자인 공모 및 협의, 그리고 기획, 관리·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각 단계에 따라서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도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구성 및 체계	7
제2장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	9
제1절 복합커뮤니티의 개념 및 유형화	11
1.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정의	11
2. 커뮤니티의 단위	17
3. 복합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경향	18
제2절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과 주요시설	22
1.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	22
2. 생활권 내 주요 시설	23
제3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사업현황	26
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	26
2. 사업추진 현황	27
3.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현황	30
4.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시설 현황	32
제4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8
1.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문제점	38
2.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 ...	42

제3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 운영사례 비교 47

제1절 센터운영 사례(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 49

1. 강남구청 문화센터 49
2.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72
3.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89

제2절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99

1. 시설의 사용료 비교 99
2. 시설 사용료 할인(대상) 및 반환 109
3. 운영시간의 비교(주중/토·일요일) 115
4. 복컴 유사시설 관리·운영의 시사점 117

제3절 충청지역 자치단체의 시설별

이용요금체계 비교 120

1. 대전광역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 120
2. 청주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121
3. 천안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122
4. 공주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123
5. 자치단체별 유사시설 사용료 비교 127

제4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 비교 129

제1절 관리방식의 비교 131

1. 직영방식 131
2. 공단위탁 133
3. 민간위탁 135





제2절 관리방식 선택(안)	140
1. 관리방식 평가기준	140
2. 관리방식 평가결과	141
제3절 공단위탁 시 합리적인 운영방안	144
1. 통합형 위탁방안(1안)	144
2. 분리형 위탁방안(2안)	145
3. 평가기준에 기초한 방안 선택	146
제4절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방안	150
1. 프로그램 운영주체	150
2. 운영주체별 관리방식 검토	151
제5절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154
1. 조직체계 구상(안)	154
2. 시청 총괄부서 설치(안)	156

제5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 및

설치 조례(안)	159
----------------	-----

제1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161
1. 주민참여형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61
2. 주민참여형 복컴시설 관리 및 운영	166
3.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전(全)과정에서의	
주민참여	170

제2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조례(안)	175
1. 파주시와 구리시의 조례 비교	175
2.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 설치 조례(안)	188
제3절 사용료 산정의 근거와 방향	193
1. 사용료 산정의 필요성	193
2.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	194
3. 공공시설 사용료 분담방식의 비교	196
4. 복컴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방향	203
제6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0



표 차례

<표 1-1>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4
<표 1-2> 연구의 구성 및 체계	7
<표 2-1> 커뮤니티시설 관련 유사개념	12
<표 2-2> 관련 법·제도에서의 커뮤니티시설 용어 정의 ..	15
<표 2-3> 커뮤니티 단위	18
<표 2-4>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가능형	21
<표 2-5> 복합화 시설	26
<표 2-6> 사업현황(2017년 11월 기준)	27
<표 2-7>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29
<표 2-8>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29
<표 2-9> 복합커뮤니티센터별 관리·운영 현황 (어진동 미포함)	31
<표 2-10>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주요 시설 현황 (’17년 11월 기준)	32
<표 2-11> 복컴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	34
<표 2-12> 복컴별 도서관 운영 현황	35
<표 2-13> 복컴별 노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36
<표 2-14> 복컴별 문화의 집 운영 현황(’17년 하반기) ..	37
<표 2-15> 향후 5년간 복컴 유지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포함) 소요 전망	40
<표 2-16> 동지역 연령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17년 하반기)	41
<표 3-1> 문화센터 현황	50
<표 3-2>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54
<표 3-3> 문화센터별 프로그램(강좌) 현황	57
<표 3-4> 강남구 문화센터 운영 인력 및 강좌수 현황 (2016.8.31. 기준)	57

<표 3-5> 강남문화센터별 위탁 연혁	58
<표 3-6> 강남문화재단 직급 및 직위	62
<표 3-7> 강남문화재단 직위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62
<표 3-8> 2016년 총괄집행내역	63
<표 3-9> 2017년 수입예산	63
<표 3-10> 2017년 지출예산	64
<표 3-11>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사서 위탁 계약	64
<표 3-12> 강남구 전자도서관 고객지원센터 위탁 계약	65
<표 3-13> 체육시설 현황	66
<표 3-14> 도시관리공단 연혁	66
<표 3-15>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정·현원	68
<표 3-16> 체육사업부 담당 업무	69
<표 3-17> 경영실적 결함손익	70
<표 3-18> 사업분야별 실적	71
<표 3-19> 경영정보	71
<표 3-20>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관	72
<표 3-21>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장비현황	76
<표 3-22>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대관현황(2016년 기준)	76
<표 3-23> 담당별 업무분장표	77
<표 3-24>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시설	84
<표 3-25>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시설	84
<표 3-26>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현원현황(정규직)	85
<표 3-2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인력(무기계약직)	85
<표 3-28>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 담당업무	86
<표 3-29>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91
<표 3-30> 마포재단 예술단	93



<표 3-31>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	100
<표 3-32>	파주 행복센터 기본시설 사용료	102
<표 3-33>	파주 행복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102
<표 3-34>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104
<표 3-35>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104
<표 3-36>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종합체육관 사용료	104
<표 3-37>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소체육관 사용료	104
<표 3-38>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그 밖의 시설 사용료	105
<표 3-39>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주차료	105
<표 3-40>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106
<표 3-41>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이용료	106
<표 3-42>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헬스	107
<표 3-43>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실내골프	107
<표 3-44>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독서실	107
<표 3-45>	파주 행복센터 기본시설 사용료	116
<표 3-46>	대전광역시 시설유형 및 이용요금	120
<표 3-47>	청주시 상상마루 사용료	121
<표 3-48>	청주시 상상마루 설비 사용료	121
<표 3-49>	청주시 에듀피아 영상관 사용료	121
<표 3-50>	청주시 나눔마당 회의실 사용료	122
<표 3-51>	청주시 상상마루 설비 사용료	122
<표 3-52>	천안시 이벤트홀 사용요금	123
<표 3-53>	공주시 문화시설 현황	123
<표 3-54>	공주시 문예회관 기본시설 사용요금	124

<표 3-55> 공주시 문예회관 부대설비 사용료	124
<표 3-56> 공주시 문예회관 냉·난방 사용료	125
<표 3-57> 공주시 문예회관 기타 사용료	125
<표 3-58> 공주시 고마 회의실 사용료	125
<표 3-59> 공주시 고마 다목적 전시장 사용료	126
<표 3-60> 자치단체별 유사시설 사용료	127
<표 4-1> 직영 시 예상 소요인력 추정을 위한 사례 ..	141
<표 4-2> 복검별 세외수입 현황(2016년 결산 기준) ..	142
<표 4-3> 기준별 관리방식의 적합성 평가	142
<표 4-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정안전부) ..	143
<표 4-5> 통합형 위탁방안의 장·단점 비교	145
<표 4-6> 분리형 위탁방안의 장·단점 비교	146
<표 4-7> 시설별 분류	148
<표 4-8> 정부와 수익자의 부담비율 설정	148
<표 4-9> 통합형과 분리형의 특징 비교	149
<표 4-10> 복검 관리 조직 역할 및 임무(안)	155
<표 5-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예시) ..	162
<표 5-2> 참여주체의 역할	172
<표 5-3>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방안	174
<표 5-4> 구리시와 파주시의 조례 비교	175
<표 5-5> 파주시 기본시설 사용료	186
<표 5-6> 파주시 부대시설 사용료	186
<표 5-7> 구리시 기본시설 사용료	187
<표 5-8> 파주시 부대시설 사용료	187
<표 5-9> 사용료 징수 관련 법령	196
<표 5-10> 필수성에 의한 분류	197



<표 5-11> 시장성(수익가능성)에 따른 분류	197
<표 5-12> 공공과 수익자 간의 부담비율	197
<표 5-13> 공공시설 사용료 부담비율 결정기준(예시) ..	200
<표 5-14> 시설유형별 정부·민간 비용부담 비율기준(안)	201
<표 5-15> 인천시 공공시설 사용료 부담비율(예시) ...	202
<표 5-16> 인천시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담비율(안) ...	202
<표 5-17> 복컴의 관리·운영비용 비교	204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념도	14
<그림 2-2>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도 현황	23
<그림 2-3> 세종시 생활권 지도 1	24
<그림 2-4> 세종시 생활권 지도 2	25
<그림 2-5>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도	28
<그림 2-6> 복컴 관련 문제점 개관	42
<그림 2-7> 복컴 관련 개선방안 종합	46
<그림 3-1> 강남문화재단 조직도	61
<그림 3-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직도	69
<그림 3-3>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전경	73
<그림 3-4>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층·동별 안내	74
<그림 3-5>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주민자치센터(복지동 1층/5층)	74
<그림 3-6>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청소년상담센터(복지동 6층)	75
<그림 3-7>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행정동 2층)	75
<그림 3-8>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파주문화원 (행정동 2층)	75
<그림 3-9>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85
<그림 3-10> 마포문화재단 조직 및 기구	91
<그림 4-1>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스펙트럼	150
<그림 4-2> 복컴 시설관리 조직체계(안)	155
<그림 4-3> 시청 복컴 총괄부서 조직구성(안)	157
<그림 5-1>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 (2017년 상반기)	163
<그림 5-2> 복컴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안내(예시)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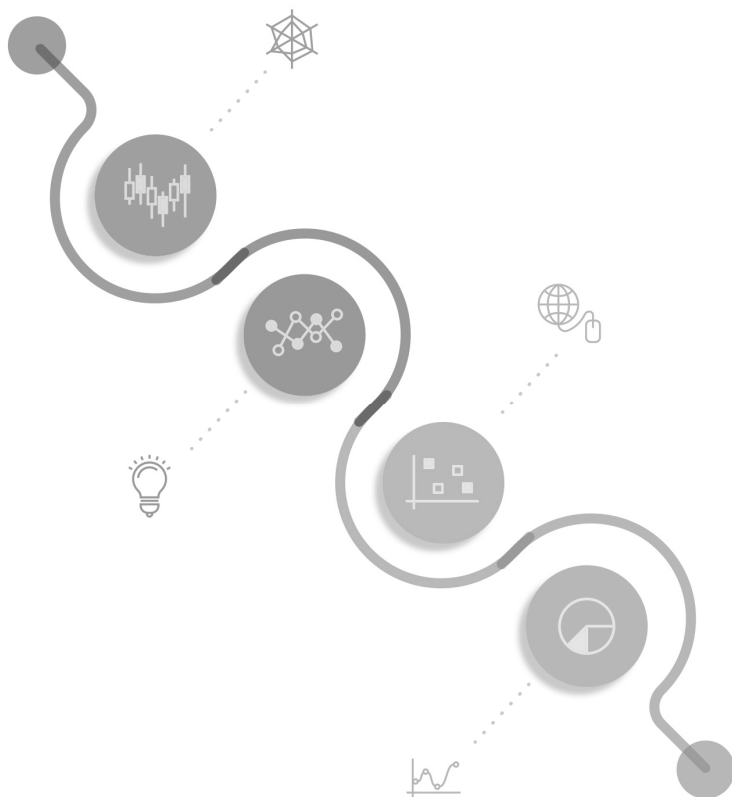


<그림 5-3> 복컴운영위원회 구성체계(안)	168
<그림 5-4> 관련 위원회 설치의 기준(예시)	170
<그림 5-5> 복컴 프로세스 전 과정에 주민참여	171
<그림 5-6> 참여형 복합커뮤니티 추진단계 및 단계별 참여자	173
<그림 5-7> 사용료 설정기준 개념 및 범위	195
<그림 5-8> 표준적인 수익자 부담비율	19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생활수준 향상과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은 단순한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복지·체육 등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원스톱 주민통합서비스의 새로운 성공모델로써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복지·문화·체육 시설 등을 통합시켜 주민이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운영되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호회 활동이나 참여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제공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주민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고,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취미활동도 즐길 수 있음
 - 또한, 동호회 등 주민들 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이자 생활자치의 공간으로 사용될 때 본래의 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의 활성화는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표 1-1>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주체	주요 이슈	→	대응 방안
이용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야 함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지 패턴 및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의 집중과 배분이 원활	→	거주자 특성에 적합한 기능 통합·배분체계 구축
	항상 참여하고 싶은 시설	→	거주자 특성에 적합한 계획·설계기술 개발
공급자	지역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공급	→	복합 및 차별화를 위한 계획·설계기술 개발
	공급이 쉬움	→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구축
	경제적 수익사업	→	커뮤니티 마케팅을 접목한 시설프로그램 개발
관리자	지역민 모두가 참여 가능	→	공동체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개발
	시설 활성화	→	공간·기능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관리가 용이	→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법 개발

출처: 강동진 외.(2008: 5) 일부 수정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26년까지로 각 생활권별 주민 입주시기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있음
 -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2개소가 건립 및 예정되어 있으며, 준공 중인 복컴이 8개소, 3개소가 공사 중, 2개소가 설계 중, 9개소에 대해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운영기준(규정)이 없어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주민들이 주말과 야간시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부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똑똑세종, 국민신문고 등)

- 주민센터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방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근무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례나 관리·운영 기준이 없다보니 운영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시설대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리·운영방식과 관련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대상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지역 7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나. 내용적 범위

-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주요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타 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사례조사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 비교분석
 -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등 운영사례별 장·단점 분석
- 합리적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시설이용 기준, 사용료 등 표준적인 관리·운영 규정 마련
 - 주민참여형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방안 마련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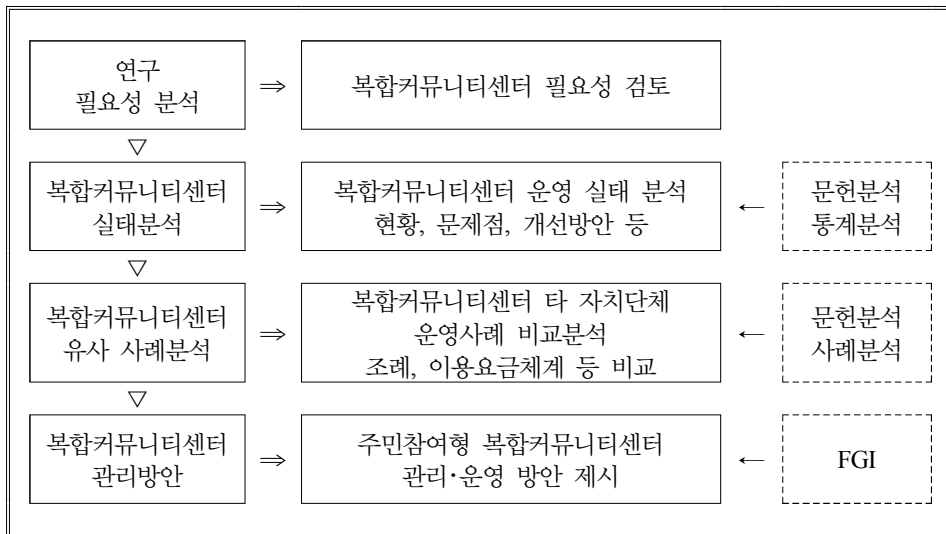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 국내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연구,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선행연구, 정부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의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함
- 관련 전문가 워크숍 실시 및 현지조사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실시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연구의 구성 및 체계

○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 전체 연구 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연구 분야별로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표 1-2> 연구의 구성 및 체계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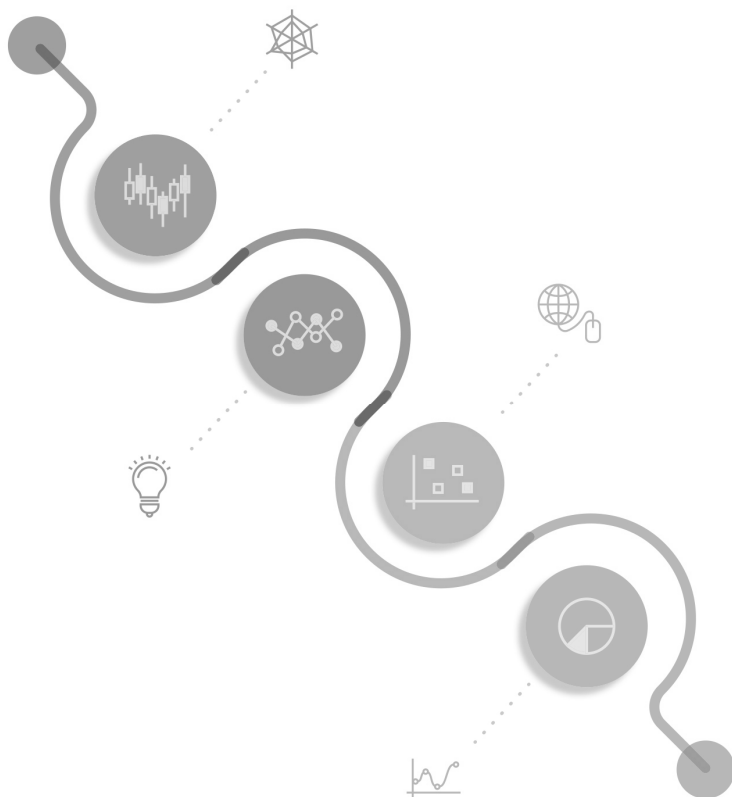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복합커뮤니티의 개념 및 유형화

제2절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과 주요시설

제3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사업현황

제4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장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복합커뮤니티의 개념 및 유형화

1.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정의

가. 커뮤니티시설의 정의

- 커뮤니티시설의 정의는 협의로서 공동체의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을 뜻하며, 광의로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영위를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커뮤니티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도시공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여기서 커뮤니티시설은 도시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의 범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함
- 또한,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커뮤니티시설의 의미는 지역사회의 공동시설을 뜻함
 - 행정적이거나 기능적 혹은 동질성의 측면에서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뜻하기도 함
- 이 시설은 단순히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커뮤니티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전반 특히 공적인 사항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목표로 함 (박영기, 1994)

<표 2-1> 커뮤니티시설 관련 유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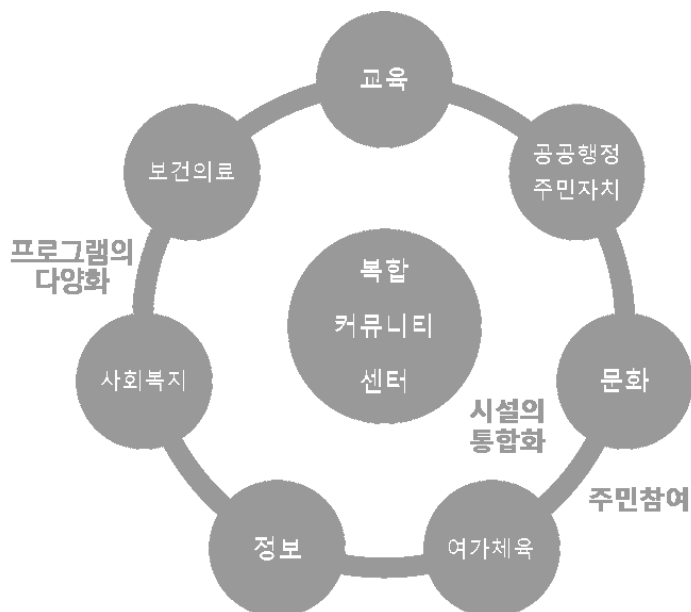
구분		정의	근거법률
학술적 정의	도시 공공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
	공공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시설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법률적 정의	기반시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 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 공동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주택법

나.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개념

- 커뮤니티의 복합화에 따른 가장 보편적인 결과물은 시설 단위에서의 복합체인 ‘복합커뮤니티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이 시설의 존재 목적은 투입 비용 대비 시설투자의 효과 극대화라는 경제 원칙에 따라 주민이용의 편익 극대화와 토지이용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즉, 커뮤니티시설 복합화는 단순히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집적이익 보다는 생활서비스 자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커뮤니티시설 복합화의 결과물을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재정의할 수 있음

- 이때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서로 다른 영역을 수용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개별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 연계 방법이 창안되어야 함
 - 공간적 한계를 넘어 주변 환경과의 연계와 해당 지역의 특정계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용이라는 관점도 고려되어야 함(강동진 외, 2008)
 - 복합커뮤니티는 물리적·기능적 차원의 복합화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물리적 복합화는 서로 연계성이 높은 시설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기능적인 복합화를 보다 용이하게 함
 - 필요한 시설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복합화의 의미가 없음
 - 시설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복합화 시설로써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됨(한병화, 2010, 이성규, 2014, 재인용)
- 물리적 차원의 복합화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능한 한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물리적 차원에서의 복합화라 함
 - 아래 그림은 위 내용에 따라 그린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개념도임
 - 투입비용 대비 시설 투자의 효과 극대화라는 경제원칙에 의해 주민이용의 편익 극대화와 토지이용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림 2-1>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념도



출처: 김문덕 외. (2008), 이성규 (2014:123) 재인용

- 기능적 차원에서의 복합화는 커뮤니티시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입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관련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이성규, 2014:16-17)

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관련 법규

-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의 커뮤니티 시설과 동일하게 주택법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63년 11월 30일 제정되었던 「공영주택법」에 근원을 두고 있음
 - 1960년대 공영주택의 건설기준 및 관리기준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한 공동시설물인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됨

- 1970년 후반 민간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택건설촉진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등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법령에 통합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및 제반편의시설 설치기준·배치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기타 규정의 운영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991년 1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개정됨
- 현행 법률체계에서 커뮤니티 관련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복리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정의함
 - 관련 법·제도에서의 커뮤니티시설 용어는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표 2-2> 관련 법·제도에서의 커뮤니티시설 용어 정의

구분	정의 및 내용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 바. 주민교육시설

구분	정의 및 내용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 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 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타 복리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출처: <http://law.go.kr> 참조.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 여기서 커뮤니티시설 개념은 공동체의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며, 광의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영위를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커뮤니티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공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사회적 의미에서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사회의 공동시설을 뜻하며, 행정적이거나 기능적 혹은 동질성의 측면에서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능률과 활력을 주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뜻하기도 함
 - 대다수의 경제활동이 주·야간의 분리된 생활패턴, 단일공간에서 단일기능의 중심에서 24시간의 생활 패턴 확대 및 단일공간에서 다목적기능 수용에 따라 경제·문화·여가활동 중심으로 패턴의 변화가 급변함에 따라 기존 커뮤니티 시설의 장·단점을 보완한 복합커뮤니티가 형성됨
- 국가는 커뮤니티시설 간 연계 가능한 물리적 시설배치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음
- 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각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개별시설 간 시너지효과는 최대화하며, 효율적인 공공시설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복합화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함
 - 하지만 대지는 한정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지가는 높아 대부분 기존 부도심 주변 동 외곽으로 형성됨
 - 이로 인해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함
 - 복합커뮤니티 시설 공간단위는 기존 커뮤니티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됨
 - 현 시점에 알맞게 인구규모, 면적규모, 도입시설 등의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이성규, 2014:23)

2. 커뮤니티의 단위

- 커뮤니티의 공간단위는 생활권 구분에 의해 구체화되며, 생활권은 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범위를 말함
 - 본 연구에서의 커뮤니티의 공간단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권의 3단계 구분 기초(소), 지역(중), 도시(대)로 사용하며, 기초생활권은 다시 단지, 근린, 지구로 구분하여 사용함

<표 2-3> 커뮤니티 단위

구분	기초생활권(소생활권)			지역생활권 (중생활권)	도시생활권 (대생활권)
	단지생활권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인구 규모	5천명	1만명	2~3만명	5~10만명	20~30만명
행정 단위		초등학교 학군단위	동 단위	군 단위	구 단위
공간 적 범위	보행 5분 이내의 거리로 단지 내 시설 이용	보행 10분 이내의 거리로 초등학생의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보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 생활권 경계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로 구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갖는 도시적 영역
특징	최소 단위의 보행 생활권	아동, 어린이의 활동권으로 가족단위의 생활권	2~3개의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	지방 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권	대도시 규모의 생활권으로 자기 완결성 구조를 가짐/ 도심 또는 부도심 성격의 중심지를 가짐

출처: 양우현 외. (2007)

3. 복합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경향

가. 복합커뮤니티 시설 이슈

-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지역민의 교류 중심이자 소통의 장소로 사용되어 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민 누구나 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통합 시스템이 없는 상태임
 - 교류 중심체이자 사회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불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시설 입지, 시설별 상호 네트워크, 거주민과 시설간의 관계 등에 대한 공간·기능적인 체계화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현재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시설은 수요지의 계층별, 지역별 특성이 배제된 채 거의 유사한 시설구성과 프로그램 위주로 조성되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존재 이유와 활성화의 성공 요건은 누가 이용하고, 누가 만들어 공급하고, 누가 관리하느냐와 관련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짐
- 이용자 차원에서의 이슈는 누구나 쉽게 가고 항상 이용할 수 있을 것, 서비스의 집중과 배분이 원활해야 할 것, 항상 참여하고 싶은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임
- 공급자 차원에서의 이슈는 지역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쉬울 것, 경제적 수익사업이 되어야 함
- 관리자 측면에서는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시설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 이에 대한 대응책은 도시계획 및 제도 차원, 계획·설계기법 차원, 관련 프로그램 차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나. 커뮤니티 복합화의 경향¹⁾

1) 커뮤니티가 복합화 되어야 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커뮤니티(공동체)’는 지역성, 긴밀한 사회적 상호관계, 동질적인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사회적인 활발한 교류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소속감을 가진 지역적 사회집단으로 정의함
- 현대도시에서 경제적 여건의 향상은 의식주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 및 복지에 대한 참여 수요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약 때문에 필요만큼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설 간의 특징을 고려한 복합화가 나타나게 됨

1) 강동진 외 6인. (2008)

- 현대도시에서의 복합화는 토지의 유효이용, 도시공간의 재생, 인구유도 효과의 창출, 시설의 공동화, 유지관리·운영의 공동화, 건설비 절약 등은 물론 주민에 대한 다양한 시설 이용기회의 제공, 지역주민의 교류 공간 제공 등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커뮤니티 복합화의 경향

- 시대의 진화와 흐름에 따라 현대도시에서의 복합화는 공간적 집적에 의한 지리적 거리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을 시간적 거리 개념으로 인식하는 정보 통신분야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사람의 본능적인 상상력과 가치관, 자아실현을 위한 요구와 개인적 사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효율의 정도가 입증되면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인간적 접촉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미래 커뮤니티의 복합화는 인간적 접촉을 중요시하는 동양적 사고의 개념이 도입된 복합화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간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 통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접근도 미래 경향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일상 생활권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생활 및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조개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상호 간의 연계성을 위한 다양한 연계 장치, 예를 들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녹색교통의 적용 등이 그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의 복합화는 시설 또는 공간 자체가 보유한 질적 특성과 함께 이들을 시·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적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들을 어우름으로써 보다 다양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다.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유형²⁾

-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가능형’은 현재의 법체계와 운영관리와 관련된 체계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실천이 가능한 유형을 의미함
- 제시된 시설들은 제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토대로 생활권별로 복합할 수 있는 가능시설들임
 - 커뮤니티의 강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권별로 지역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시설들도 포함함
 - 아래 표에서 복합 형태는 생활권별로 발생가능한 복합화를 예시한 것이지만 제도적인 여건만 확보된다면 민간투자 유도 등을 통해 생활권간의 복합화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

<표 2-4>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가능형

구분		소 생활권형	중 생활권형	대 생활권형
복합 목적		일상생활 서비스 향상 공동체생활 및 의식 향상	보호·보장적 생활 서비스 향상 복지 및 문화·여가생활의 중심	지역발전서비스 향상 개별적 시설의 전문화 중심
주요 시설	공공행정 시설	주민자치센터,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의료 시설		보건소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립어린이집	
	문화시설	작은도서관, 근린공원	구민회관, 문화회관, 공공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중앙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스포츠문화 complex
	복지시설	경로당, 아동(케어)센터, 아동센터	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고용지원센터
복합 형태 (예시)				

출처: 강동진 외 6인. (2008)

2) 강동진 외 6인. (2008)

제2절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과 주요시설³⁾

1.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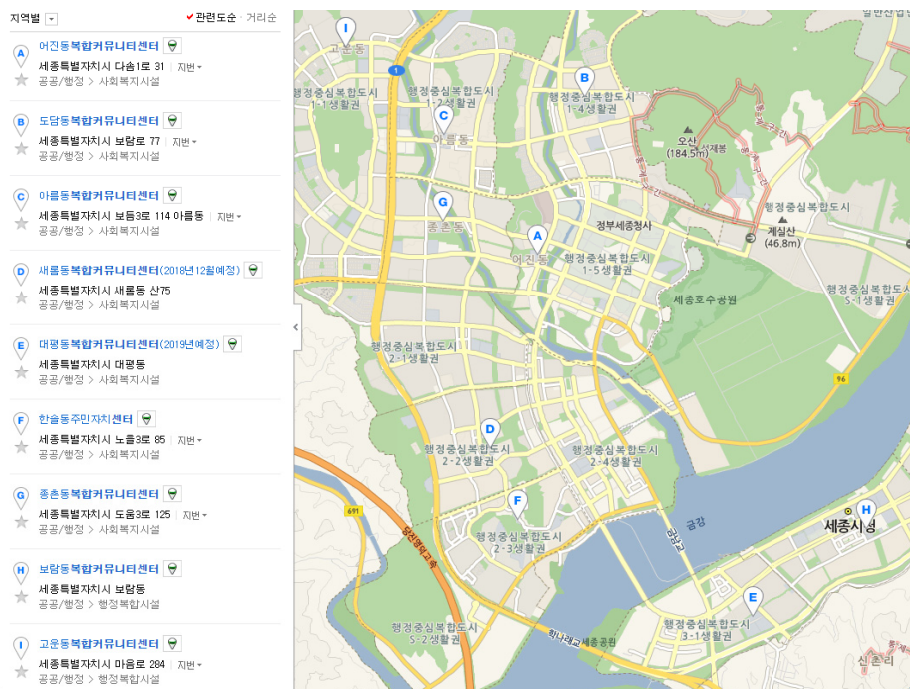
-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현 실태를 분석하기 이전에, 세종시의 ‘생활권’ 개념을 기본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실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검색할 경우, ‘새롬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이라는 문서는 나오지 않지만 ‘2-2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과 같은 제목의 문서는 검색가능 함. 이러한 동단위의 센터 계획서보다 식별 번호 형태의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세종시에서 ‘생활권’ 단위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네이버 지도⁴⁾에서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검색했을 때, 어진동, 도담동, 아름동, 새롬동, 대평동, 한솔동, 종촌동, 보람동, 고운동에 센터가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지도상에는 1-1, 1-2 등의 숫자가 나타나 있음. 예를 들어, 2-2 생활권은 새롬동으로, 새롬동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18년에 건립될 예정임(아래 <그림 2-2> 참고)
- 행정동, 법정동 등의 ‘동’ 경계와는 달리, 생활권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임. 생활권이란 통학, 쇼핑, 문화, 공공서비스 등 기본의 생활단위가 되는 공간단위로, 서울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도시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 중요한 개념임. 분당, 일산, 동탄 등의 신도시에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바가 있음

3)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블로그 2013.09.09. 왜 첫마음은 1-1 생활권이 아니라 2-3 생활권일까? 세종시의 생활권 전격해부! (검색일자: 2017.04.11.) (해당 블로그의 포스팅은 행복청 블로그 기자 남선희가 권영삼(2011). 우리나라 신도시계획에서 생활권 공간구조의 변화, 「국토계획」. 제46권 2호 pp.193-210을 참고로 하여 작성함 / <http://blog.naver.com/macc2030/110175758873>)

4) 네이버 지도 검색 <http://map.naver.com> (검색일자: 2017.04.11.)

- 세종시 역시 초기부터 세종시에 도입해야 하는 생활권의 적정인구, 적정면적 등에 대한 연구 끝에 생활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이에 따라 세종시 계획 구역을 3단계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음. 1단계는 도시생활권, 2단계는 중심 생활권, 3단계는 기초생활권임(이하 생활권)

<그림 2-2>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도 현황



출처: 네이버 지도 (검색일자: 2017.04.11.)

2. 생활권 내 주요 시설

- 세종시의 생활권은 인구 2-3만명을 기준으로 생활권 하나마다 복합문화시설, 근린운동장, 주민복합센터가 각 1개씩, 초등학교는 각 2개씩, 중고등학교는 각 1개소씩 들어가게 됨(아래 <그림 2-3> 참고)

- 1-1 생활권부터 첫 마을인 2-3 생활권, 그리고 마지막 6-4 생활권까지 21개의 생활권이 있음. S-1과 S-2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녹지공간으로 생활권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 2-3> 세종시 생활권 지도 1



출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블로그, 2013.09.09. (검색일자: 2017.04.11.)

- 앞 번호가 1인 생활권의 중심기능은 중앙행정, 앞 번호가 2인 생활권은 문화·국제교류 기능, 3으로 시작하는 생활권은 도시행정기능, 4로 시작하는 생활권은 대학·연구 기능, 5로 시작하는 생활권은 의료·복지 기능, 6으로 시작하는 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 기능이 중심이 됨(다음 <그림 2-4> 참고)

<그림 2-4> 세종시 생활권 지도 2



출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블로그, 2013.09.09. (검색일자: 2017.04.11.)

- 따라서 기초생활권인 1생활권과 2생활권을 중심으로 먼저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다른 지역(읍·면)으로 건설 계획이 확대되고 있음

제3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과 사업현황

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⁵⁾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 하여 각 생활권 주민의 편익증진 및 주민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함
- 복합화 시설에는 기초생활권 16개소와 지역생활권 6개소가 있음. 기초생활권 시설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 복지시설(노인여가, 교양교실), 복합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의 시설이 있음. 지역생활권 시설에는 기초생활권 주요시설에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이 포함됨(아래 <표 2-5> 참고)

<표 2-5> 복합화 시설

생활권	복합화 주요시설
기초생활권 (16개소)	주민센터(동사무소),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 교양교실), 복합문화시설(도서관, 문화의집),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
지역생활권 (6개소)	기초생활권 주요시설 +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이트 대변인실(2016.11.17)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참고자료(검색일자: 2017.04.11)

*기초생활권: 행복도시 최소 행정단위(동)로서, 2만~2.5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생활권: 6개 생활권중 중심 생활권으로, 인구 5만~10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1-2, 2-3, 3-2, 4-2, 5-2, 6-2생활권 총 6개소)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이트 대변인실(2016.11.17.),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참고자료 (<http://www.naacc.go.kr/>, 검색일자: 2017.04.11).

2. 사업추진 현황

-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26년까지로 되어 있음. 각 생활권별 주민 입주 시기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함
 -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2개소가 건립 및 예정되어 있으며, 준공 8개소, 공사중 3개소, 설계 중 2개소, 사업예정 9개소임
- 시설운영으로는 준공전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준공 후 시설운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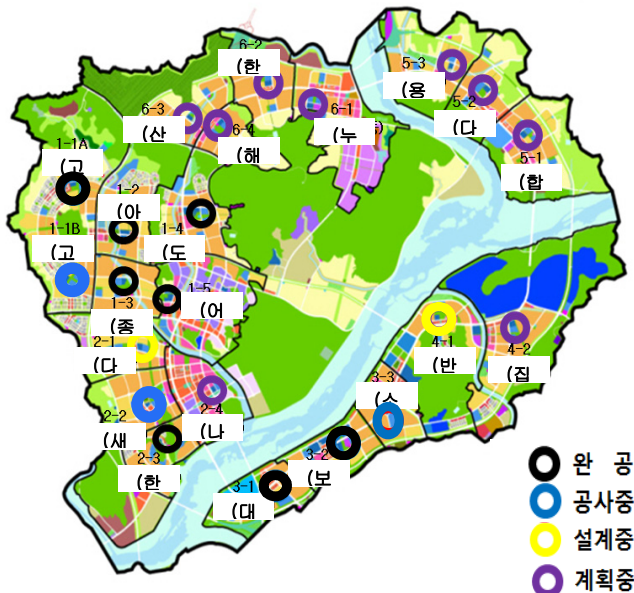
<표 2-6> 사업현황(2017년 11월 기준)

	사업명	사업 기간	부지면적 (㎡)	연면적 (㎡)	총사업비 (억원)	비고
준 공 (8)	2-3생(한솔동)	'06~'12	52,539	51,946	1,006	지역복컴
	1-2생(아름동)	'08~'13	26,338	19,015	578	지역복컴
	1-4생(도담동)	'08~'13	11,158	11,951	358	
	1-5생(어진동)	'08~'13	14,982	13,461	382	
	1-3생(충촌동)	'09~'15	8,109	12,502	298	
	1-1생(A)(고운동)	'09~'16	8,057	11,793	301	
	3-2생(보람동)	'09~'16	15,395	17,460	492	지역복컴
	3-1생(대평동)	'09~'17	7,895	12,023	308	'17.10.10.준공
공 사 중 (3)	1-1생(B)(고운동)	'09~'18	8,243	12,075	321	'18.4.22.준공예정
	3-3생(소담동)	'14~'18	8,196	14,213	378	'18.3.22.준공예정
	2-2생(새롬동)	'14~'18	8,086	14,100	377	'18.3.16.준공예정
설 계 (2)	2-1생(다정동)	'16~'19	10,763	12,380	461	'19.5..준공예정
	4-1생(반곡동)	'16~'19	7,705	12,380	442	'19년 준공예정

※ 6-4(해밀리), 4-2(집현리), 2-4(나성동), 6-3(산울리), 5-1(합강리), 5-2(다솜리), 5-3(용호리), 6-1(누리리), 6-2(한별리) 등 9개소는 '17년 이후 추진

-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도는 아래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음. 준공 중인 커뮤니티센터 8개소, 공사 중인 커뮤니티센터 3개소, 설계 중 커뮤니티센터 2개소, 사업예정인 커뮤니티센터 9개소임

<그림 2-5>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도



- 복합커뮤니티센터 세부시설 현황은 기초생활권과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알파룸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2-7> 참고)

<표 2-7>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분	세 부 시 설
동사무소(주민센터)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동대본부 등
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휴게실 등
문화의집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등
보육시설	보육실, 놀이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학습실, 휴게실, 식당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교실 등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GX룸 등
알파룸	동호회, 주민참여공간 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이트, 담당자 대변인실(2016.11.17.).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참고자료(검색일자: 2017.04.11.).

-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기초생활권의 시설(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의집,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알파룸)에 지역 생활권만의 시설인 수영장, 경찰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가 추가됨 (<표 2-8> 참고)

<표 2-8>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구 분	세부시설
동사무소(주민센터)	동사무소, 동대본부 등
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등
문화의집	관람실, 문화교실, 다목적홀 등
보육시설	보육실, 놀이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학습실, 휴게실, 식당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교실 등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GX룸 등
알파룸	동호회, 주민 참여공간 등
수영장	수영장
경찰지구대	경찰지구대 사무실
우체국	우체국 사무실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사무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이트, 담당자 대변인실(2016.11.17.).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참고자료(검색일자: 2017.04.11.).

3.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17년 11월 기준) 8개소가 준공되어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신도시 지역에 총 22개의 복컴이 건립될 예정임 (읍면지역도 단계별로 10개의 복컴이 건립될 예정임)
- 준공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규모는 최대 지하 2층~지상5층까지, 평균 연면적 12,750㎡ 규모임. 이는 타 자치단체 문화체육센터와 비슷한 규모에 해당함
- 복컴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공용공간과 도서관, 체육관, 강당, 문화의 집 등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며, 복컴 내 입주한 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시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운영함
- 복컴 관리·운영 인력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며, 청사 시설관리 1명, 도서관 1명,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명 등 복컴별로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음
- 복컴 시설·관리 운영비는 '16년 결산기준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7억~9억정도 (도서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소요되었으며, 주로 공공요금, 청사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체육관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외에 복컴 시설(강당, 강의실, 회의장 등)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지 않으며, 북카페를 설치한 아름동과 도담동 복컴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임대수익이 없음
- 복컴 시설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체육관과 도서관 등은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인 문화의 집은 야간에는 운영하지만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필요 시 개방)
- 복컴별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48개('17년 하반기 기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9> 복합커뮤니티센터별 관리·운영 현황(어진동 미포함)

구 분	계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인구수 (’17.11.)	160,278명	20,229명	32,681명	24,505명	30,568명	26,358명	25,937명
연 면 적	67,682㎡	4,635㎡	11,975㎡	11,415㎡	12,502㎡	11,794㎡	15,361㎡
건물 규모	최대 지하 2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1층 지상 5층
프로 그램 (’17년 하반기)	289개	48개	47개	35개	55개	67개	37개
시설 관리비 (’16년 결산)	3,271백만원	708백만원	870백만원	898백만원	795백만원	-	-
임대 수입 (’16년 결산)	47,709천원	-	1,845천원	45,864천원	-	-	-
주요 시설	-	주민센터 도서관 체력실 중대본부 문화의집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동대본부 도서관 문화의집 노인 문화센터 체육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민원콜센터 드림스타트 도서관 문화의집 노인 문화센터	주민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터 문화의집 도서관 노인문화 센터 체육관 시설공단 등	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진흥센터 문화의집 도서관 노인문화 센터 체육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문화의집 도서관 노인 문화센터 체육관 수영장
관리 운영 인력	18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동 개청 시기	-	’12.7.	’14.2.	’15.1.	’16.4	’17.2.	’17.2.

※ ’17년에 신설된 고운동·보람동은 시설관리비 제외(정확한 산출 불가), 관리·운영인력은 동 주민센터 직원(도서관, 주민자치, 시설관리)만 반영

4.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요시설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별로 시설의 수와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이나, 대부분의 북컴에서는 체육시설 또는 스포츠센터, 어린이집(보육시설 포함),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을 공통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표 2-10>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주요 시설 현황('17년 11월 기준)

동별(연면적)	층별(연면적)	주요 시설현황(연면적)
한솔동 (4,635㎡)	지하1층 (1,233㎡)	기전실(420㎡), 주차장(647㎡, 23면)
	1층 (1,130㎡)	주민센터(636㎡), 노인회·주민자치위원회·수유실 등(359㎡)
	2층(817㎡)	노을(201호, 60㎡), 나리(202호, 43㎡), 관리실(45㎡), 회의실(59㎡), 누리(203호, 79㎡), 어울(204호, 90㎡)
	3층(988㎡)	도서관(280㎡), 체력단련실(61㎡), 대강당(344㎡)
	4층(467㎡)	한누리(401호, 239㎡), 중대본부(37㎡)
도담동 (11,975㎡)	지하2층(2,666㎡)	체육관(1,722㎡), 기계·전기실(712㎡)
	지하1층(2,409㎡)	체력단련장(618㎡), 주차장(1,547㎡)
	1층(2,901㎡)	주민센터(693㎡), 어린이집(1,060㎡), 공동육아나눔터(414㎡), 동대본부(84㎡), 도담카페(51㎡)
	2층(1,779㎡)	급식지원센터 등(364㎡), 보건소(211㎡), 도서관(806㎡)
	3층(1,158㎡)	문화관람실 및 문화의집(1,035㎡)
	별동 1층	노인문화센터(569㎡)
	별동 2층	노인문화센터(299㎡)
	알파동(별동)	노인정(194㎡)
아름동 (11,415㎡)	지하 1층(2,776㎡)	기계·전기실(676㎡), 주차장(1,763㎡, 85대)
	1층(2,765㎡)	북카페(80㎡), 어린이집(593㎡), 주민자치센터(598㎡)
	2층(1,549㎡)	세종시 민원콜센터, 드림스타트센터(548㎡), 노인문화센터(370㎡)
	3층(2,770㎡)	문화의집(905㎡), 다목적 강당(619㎡)
	4층(1,655㎡)	도서관(838㎡)

동별(연면적)	층별(연면적)	주요 시설현황(연면적)
종촌동 (12,502㎡)	지하2층(1,773㎡)	체육관(1,466㎡)
	지하1층(4,613㎡)	세종체력 인증센터, 다목적실, 주차장(2,710㎡, 88대)
	1층(1,709㎡)	주민센터(625㎡), 어린이집(605㎡)
	2층(1,608㎡)	지역아동센터(319㎡), 노인복지센터(495㎡)
	3층(691㎡)	시설관리공단·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330㎡)
	4층(1,080㎡)	문화의집(835㎡)
	5층(1,028㎡)	도서관(806㎡)
고운동 (11,794㎡)	지하1층(4,065㎡)	주차장(2,887㎡), 기계·전기실(657㎡)
	1층(2,442㎡)	어린이집(524㎡), 체육관(848㎡), 주민센터(548㎡)
	2층(1,692㎡)	청소년진흥센터(237㎡), 탁구장(201㎡), 에어로빅실(298㎡), 헬스장(177㎡)
	3층(1,384㎡)	문화관람실(205㎡), 미술실(94㎡), 음악실(22㎡), 대회의실(74㎡), 경로당(185㎡), 노인문화센터(212㎡)
	4층(1,142㎡)	문화교실(78㎡), 아트리움(187㎡), 강의실(79㎡), 알파룸1(44㎡), 알파룸2(48㎡), 알파룸3(45㎡), 다목적실(52㎡)
	5층(1,068㎡)	도서관(열람실, 나눔서재 포함, 711㎡)
보람동 (15,361㎡)	지하1층(6,850㎡)	수영장(1,240㎡), 주차장(3,849㎡, 112대), 기계·전기실(1,088㎡)
	1층(1,988㎡)	주민센터(754㎡), 어린이집(677㎡)
	2층(1,798㎡)	다목적강당(282㎡), 노인문화센터(523㎡), 지역아동센터(259㎡), 동대본부(88㎡)
	3층(2,087㎡)	체육관(1,059㎡), 체력단련실(268㎡), GX룸(207㎡), 사무실 및 샤워실(102㎡)
	4층(1,416㎡)	문화의집(516㎡), 대회의실(167㎡)
	5층(1,222㎡)	도서관(778㎡)
어진동 (13,461㎡)	지하1층(2,399㎡)	기계·전기실(802㎡), 주차장(1,351㎡)
	1층(3,818㎡)	어린이집(895㎡), 국민디자인과제 추진단(146㎡), 고대 행정대학원(197㎡),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125㎡), 체육시설(731㎡), 새만금개발청(943㎡)
	2층(5,272㎡)	새만금개발청(1,388㎡), 교통공사(446㎡), 문화재단(379㎡), 기동대(154㎡), 체육관(1,925㎡)
	3층(1,972㎡)	새만금개발청(1972㎡)

가. 체육시설 운영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체육시설 포함)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단체들이 유료로 이용하고 있음
 -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동은 한솔동, 아람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고운동과 보람동임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 운영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담·종촌·고운·보람동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체육관(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음
- 7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아람동만 체육관을 코오롱 스포렉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람동은 체육관을 제외한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임

<표 2-11> 복컴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

구 분	한솔동	도담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어진동
장소	3층	지하2층	지하2층	1층/4층	3층	2층
규모	61㎡ (러닝머신 등)	1,722㎡ (배드민턴 8, 탁구대 5)	1,466㎡ (배드민턴 3, 탁구대 10)	1,685㎡ (배드민턴 3, 탁구대 4)	1,059㎡ (배드민턴 4, 탁구대 3)	1,924㎡ (배드민턴 8, 탁구대 6)
일일 이용자 수	50명	200명	120명	80명	80명	90명
운영 시간 (주말)	09:00~21:00 (토, 09:00~18:00)	09:00~22:00 (토·일, 09:00~18:00)	09:00~22:00 (토·일, 09:00~18:00)	09:00~22:00 (토·일, 09:00~18:00)	09:00~22:00 (토·일, 09:00~18:00)	09:00~22:00
운영 인력	1명	1명(무기)	1명	1명	1명	1명(공익)

※ 아람동 체육센터 위탁 운영(평일 06시~22시, 휴일 06시~18시/코오롱 스포렉스)

나. 도서관 운영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소이며, 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해당지역 주민들임
 -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6개 동은 한솔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과 보람동임
- 도서관 운영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이며, 주말의 경우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개방하고 있음(복검별 교차 운영)
 - 도서관은 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운영은 동장이 총괄하고 있는 구조임
 - 다만, 고운동은 사회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표 2-12> 복검별 도서관 운영 현황

구 분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규모	336㎡	1,071㎡	1,736㎡	1,281㎡	1,067㎡	1,221㎡
장서(권)	17,902	24,447	32,919	25,078	10,002	6,517
운영시간 (주말)	09:00~22:00 (토, 09:00 ~18:00)	09:00~22:00 (토, 09:00 ~18:00)	09:00~22:00 (일, 09:00 ~18:00)	09:00~22:00 (일, 09:00 ~18:00)	09:00~22:00 (토, 09:00 ~18:00)	09:00~22:00 (토, 09:00 ~18:00)
운영인력	사서1, 기간제1	사서1, 기간제1	사서1, 기간제2	사서1, 기간제2	사서1 (시간임기제)	사서1 (시간임기제)

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문화센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이용자는 60세 이상의 주민임
 -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으로는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과 보람동을 들 수 있음

- 노인문화센터는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정하고 있음
- 노인문화센터는 시청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인력은 전체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보조원 1-2명(장애인일자리 참여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3> 복컴별 노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구 분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규모	867㎡	370㎡	441㎡	184㎡	610㎡
구성	여가활용실, 시청각실, 교양교실1·2 등	여가활용실, 알파룸 1·2	여가활용실 1·2, 시청각실, 교양교실1·2	여가활용실 1·2·3, 휴게실	여가활용실1·2, 사무실
프로그램 강좌 수	8개	6개	5개	4개	3개
운영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운영인력 (보조원)	2	1	1	1	1

라. 문화의 집 운영 현황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문화의 집을 6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복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동으로는 한솔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과 보람동을 들 수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별로 평일 주·야간에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로 프로그램이 달라서 운영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필요 시 일부 프로그램은 휴일에 운영하기도 함

-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나,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총괄은 동장이 책임지고 있음
- 강의실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음

<표 2-14> 복컴별 문화의 집 운영 현황('17년 하반기)

구 분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규모	489㎡	584㎡	1,524㎡	893㎡	928㎡	516㎡
프로그램 강좌 수	48개	47개	35개	55개	67개	37개
운영시간	09:00~21:00	09:00~21:00	09:00~21:00	09:00~21:00	09:00~18:00	09:00~21:00
운영인력	직원1	직원1	직원1	직원1	직원1	직원1

제4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문제점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시설 건립 시기,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원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해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함

가. 시설 건립 시기 불일치

- 우선적으로, 개별 시설의 건립 시기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음. 이는 아파트 주민 입주 시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임
 - 건립 시기 불일치는 다시 세부적으로 첫째, 주민 입주 시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시기의 불일치를 들 수 있으며, 둘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시기와 주민센터 개청 시기의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주민 입주 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주민들은 입주 초기 정주여건 미비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운동의 경우 '15년 초에 주민 입주가 이루어졌으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6년 말에 준공되어 약 2년의 공백기가 발생하였음
- 둘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시기와 주민센터 개청 시기 간의 불일치를 들 수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도 주민센터 개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촌동의 경우는 '15년 4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었으나, 주민센터 개청은 '16년 4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음

나. 전담부서 부재

- 시청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임
 - 즉,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인수에서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음
- 주민센터 개청 전·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업무 수행의 혼선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개청 이전에는 행정도시지원과 공공건축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개청 이후에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 운영인력 부족

-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운영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동별로 운영인력을 1명만 배치하는 것으로는 야간이나 휴일에 실시하고 있는 시설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탄력적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라. 운영재원 부족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 및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2014년 건설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 당 연 10억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향후, 총 2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지역에 건립·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5> 향후 5년간 복컴 유지관리비(프로그램운영비 포함) 소요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규 모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개소	17,553	3,271	3,393	3,495	3,601	3,793
한솔동 (‘12.7.개청)	지하1층~지상4층 (4,635㎡)	3,783	708	729	751	774	821
도담동 (‘14.2.개청)	지하2층~지상3층 (11,975㎡)	4,648	870	896	922	951	1,009
아름동 (‘15.1.개청)	지하1층~지상4층 (11,415㎡)	4,798	898	925	953	981	1,041
종촌동 (‘16.4.개청)	지하2층~지상5층 (12,502㎡)	4,324	795	843	869	895	922

※ 2016년은 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신설 복컴인 종촌동은 초기 리모델링 비용 제외), 향후 (‘17~’20년) 증가분은 물가상승률 및 건물노후화 감안하여 3% 증액함

마.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

- 복합커뮤니티센터별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취미·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이 성인들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 등 전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개설되지 못하는 실정임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표 2-16> 동지역 연령별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17년 하반기)

구 분	계	성인	아동·청소년	비고
합계	289개 (100%)	278개 (96.2%)	11개 (3.8%)	-
한솔동	48개	46개 (96%)	2개 (4%)	-
도담동	47개	47개 (100%)	0개 (0%)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부재
아름동	35개	34개 (97%)	1개 (3%)	-
종촌동	55개	55개 (100%)	0개 (0%)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부재
고운동	67개	65개 (97%)	2개 (3%)	-
보람동	37개	31개 (83.8%)	6개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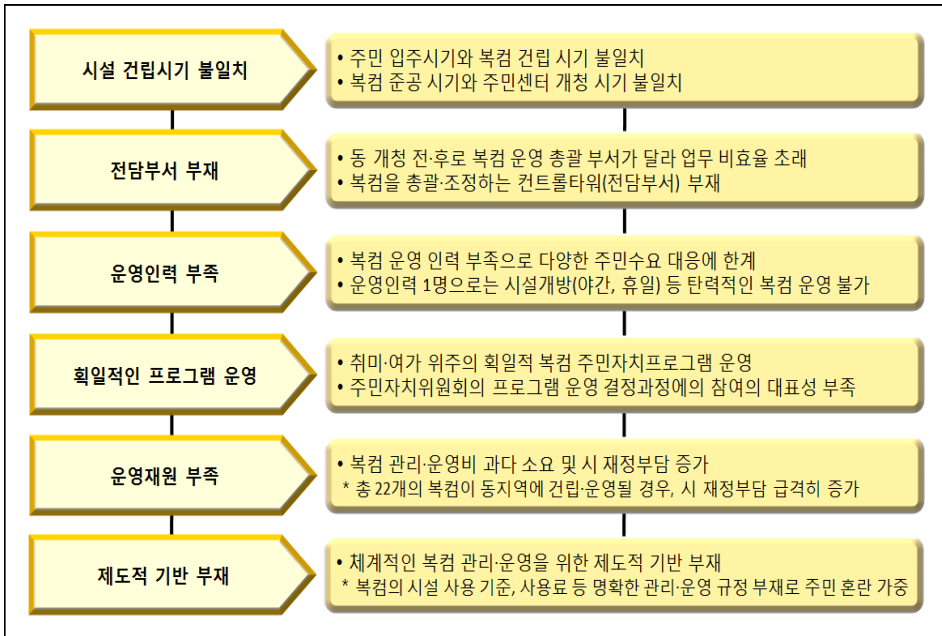
바. 제도적 기반 부재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타 자치단체의 경우,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 기준, 사용료, 위탁관리 등에 대한 관리·운영 규칙 부재로 주민들 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 및 관리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사. 문제점의 종합

-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하면, 시설 건립 시기와 주민입주 시기의 불일치, 전담부서의 부재, 운영인력의 부족, 획일적 프로그램의 운영, 운영재원의 부족, 제도적 기반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2-6> 복컴 관련 문제점 개관



2.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

가. 시설 건립 시기 불일치 해소

-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시기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복합 커뮤니티센터 이용에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별로 주민들의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수정하여 최단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18년 상·하반기에 주민 입주가 예정된 다정동과 반곡동의 경우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은 약 2년 이후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 공백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입주 시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시기 간의 불일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백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인접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나.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설치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시청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인계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15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될 경우 센터 관련 업무의 종합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운영, 기획·조정, 컨설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함

다. 운영인력의 확보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건물 완공 이전에 담당조직의 설치 및 인력충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활용에 대한 탄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나,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과 자치모델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새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부족한 인력은 센터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을 야간과 휴일에 개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음('17년 7월부터)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형(자원봉사자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하여 운영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 현재의 성인층 중심의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야 함
 -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인구구성 비율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가칭) 또는 프로그램 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마. 운영재원의 확보

- 타 자치단체의 경우, 커뮤니티센터 내의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 이용 시간, 이용 시기(주중/주말) 등에 따라서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규모, 개설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타 자치단체의 수준 이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시 재정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이용 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사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된 시설의 경우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함
-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강당, 알파룸, 문화의 집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된 체육관(2시간 기준 천원)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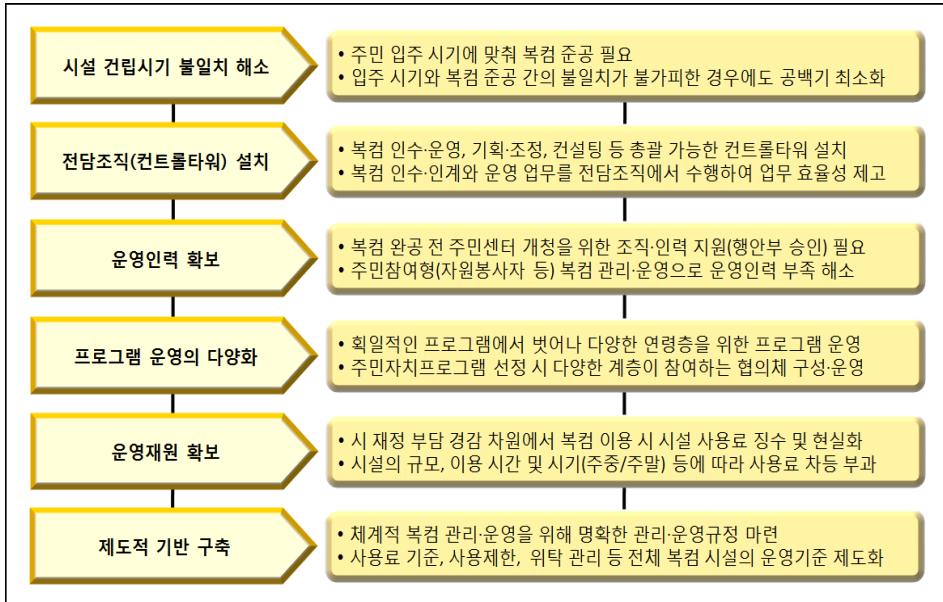
바. 제도적 기반 구축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지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용료 책정 및 부과의 기준, 시설사용 제한, 관리책임 범위, 위탁관리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시설 및 개별공간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등의 조례의 경우 복검에 통합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 개선방안의 종합

-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시설 건립 시기 불일치 해소,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설치, 운영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운영재원 확보,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2-7> 복컴 관련 개선방안 종합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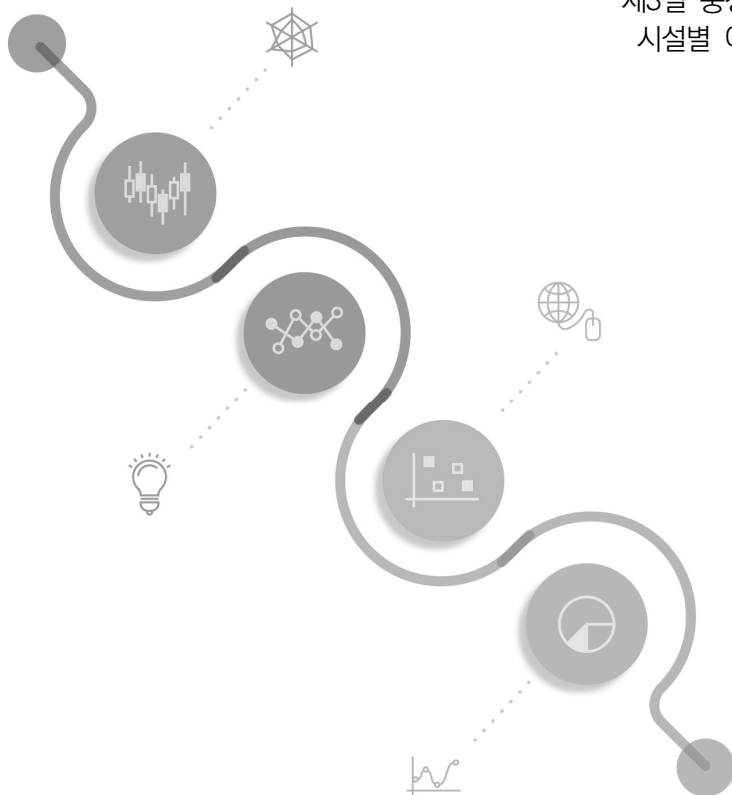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 운영사례 비교

제1절 센터운영 사례
(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제2절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제3절 충청지역 자치단체의
시설별 이용요금체계 비교



제 3 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 운영사례 비교

제1절 센터운영 사례(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1. 강남구청 문화센터

가. 강남구 문화센터의 개념 및 현황⁶⁾

1) 강남구 문화센터 개념

- 강남구 문화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됨.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체육활동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함
 - 여기서 “문화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의 생활체육과 취미 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함
 - “취미생활”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함
 - “사용료”란 문화·취미·체육교실 수강을 위한 수강료와 강당 등에 대한 대관료를 말함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13.]

관리책임부서: 자치행정과 문화센터팀

- 문화센터의 기능으로는 첫째,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 둘째,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문화활동 교육,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셋째,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을 들 수 있음

2) 강남문화센터 현황

- 강남구청은 단순한 증명민원발급을 위한 기존의 동주민센터에서 탈피,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종합행정시설인 문화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아래 <표 3-1> 참조)
- 강남구는 1997년 ‘논현문화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12년도 12월 도곡1 문화센터(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총 15개 문화센터를 건립하였음
- 문화센터는 기존의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제외한 여유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취미,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함

<표 3-1> 문화센터 현황

구분	신사문화센터	논현1문화센터	논현2문화센터	청담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위치	압구정로 128	학동로20길 25	학동로43길 17	압구정로79길 26	봉은사로 616
대지면적	447.9㎡ (135.4평)	926.5㎡ (280.0평)	1,767.3㎡ (534.6평)	1,178.9㎡ (356.6평)	1,299.3㎡ (393평)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5층	지하2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8층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722.81㎡ (521.15평)	4,003.3㎡ (1,211평)	7,472.9㎡ (2,260.5평)	3,203.27㎡ (968.9평)	6,543.89㎡ (1,979.5평)
준공일	2001.11.12	2001.11.23	1997.08.31	1999.09.30	2009.09.06
층 별 용 도	지3층				주차장, 기계실
	지2층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지1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1층	주차장	어린이집	주민센터, 동대본부	탁구교실

구분	신사문화센터	논현1문화센터	논현2문화센터	청담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2층	주민센터	회의실, 동대본부	동대본부 등	정보화교실, 동대본부	주민센터, 동대본부
3층	사무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주민센터, 동장실
4층	동대본부, 회의실	생활체육교실	여성능력 개발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취미교실 등
5층	생활문화교실	극장식강당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6층	다목적강당		도서관	다목적강당	실내골프장, 헬스장
7층			극장식강당	도서관	다목적강당
8층				자료실, 기타	

출처: 강남구청(2016). 2016 규정백서.

구 분	삼성2문화센터	대치1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	대치4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
위치	봉은사로 419	남부순환로 391길 19	영동대로 65길 24	도곡로77길 23	역삼로7길 16
대지 면적	730.6㎡ (221.0평)	661.2㎡ (200평)	3,260.7㎡ (986.3평)	1,154.1㎡ (349.0평)	3,382.4㎡ (1,023.1평)
규모	지하2층/ 지상8층	지하3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2층	지하2층/ 지상6층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4,144.96㎡ (1,253.8평)	2,513.9㎡ (760.4평)	9,932.67㎡ (3,004.8평)	4,238.7㎡ (1,282.2평)	10,873.98㎡ (3,289.3평)
준공일	2004.11.12	2007.12.27	2006.08.05	2004.06.10	2007.07.13
층 별 용 도	지3층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기계실		정화조, 기계실
	지2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통신실	주차장	주차장, 문서고
	지1층	주차장	도서관, 헬스장	주민센터	헬스교실, 주차장
	1층	주민센터	주민센터	체육(골프)교실	어린이 문화교실
	2층	민원실	동장실·생활문화교실	도서관, 공연장	주민센터, 전시실
	3층	회의실	생활체육교실, 동대본부		생활문화교실 등
	4층	정보화교실	다목적강당		강당, 음악교실
				도서관	문화·정보화교실

구 분	삼성2문화센터	대치1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	대치4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
5층	생활체육교실	식당		극장식강당	도서관, 글로벌 빌리지센터
6층	헬스장			자료실, 기타	
7층	극장식강당				
8층	하늘공원(식당)				

출처: 강남구청(2016). 2016 규정백서.

구 분	역삼2문화센터	도곡1문화센터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도곡2문화센터	개포2문화센터	세곡문화센터
위치	도곡로43길 25	도곡로18길 57	남부순환로 378길 34-9	개포로 511	밤고개로 286
대지 면적	495.4㎡ (149.8평)	2812㎡ (850.6평)	1,181.4㎡ (357.3평)	661㎡ (199.9평)	2,459㎡ (743.8평)
규모	지하3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6층	지하3층/ 지상5층	지하3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975.78㎡ (597.6평)	9,976.63㎡ (3,017.9평)	4,780.84㎡ (1,446.2평)	2,790.85㎡ (844.2평)	3,590.32㎡ (1,086평)
준공일	2010.02.18	2012.12.14	2009.09.18	2009.10.24	2003.07.03
층 별 용 도	지3층	기계실,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지2층	서고, 창고, 주차장	주차장, 식당	주차장	생활체육교실, 주차장
	지1층	문화취미교실, 동대본부	동대본부, 생활교실	주차장, 골프연습실	다목적강당
	1층	주민센터	육아지원센터, 헬스장	주민센터, 동문고	주민센터
	2층	동장실, 회의실	주민센터, 북카페	생활문화교실, 헬스장	주민센터
	3층	생활문화교실	도서관, 자료실	문화취미교실, 정보화교실	생활문화교실, 헬스장
	4층	다목적강당	도서관, 자료실	공연장, 식당	동대본부, 식당
	5층	헬스장	도서관, 자료실	공연장, 전시실	

출처: 강남구청(2016). 2016 규정백서.

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구청장은 설치 목적에 맞게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해야 함.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강남문화재단 또는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문화센터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 선정기준, 시설규모, 용도, 위탁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2) 운영시간 및 휴무일

-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평 일 : 06:00 ~ 22:00
 - 토요일 : 06:00 ~ 18:00
 - 일요일·공휴일 등 : 휴관(근로자의 날 및 공직선거일 등 포함)
- 문화센터 내 시설의 1회 사용은 강당은 2시간,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구청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료 산정은 다음과 같음
 -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함
 -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 이용은 평일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음

- 구청장은 그밖에 문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이때 휴관일자는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3) 운영프로그램

-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시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특히,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이 만족하는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2015.12.31. 기준)

<표 3-2>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수	강사수(명)	이용주민(명)	동인구수(명)
신사문화센터	46개 강좌(생활체육25, 취미문화21)	31	728	18,281
논현1문화센터	25개 강좌(생활체육20, 취미문화5)	17	433	24,720
논현2문화센터	37개 강좌(생활체육26, 취미문화11)	37	636	22,636
청담문화센터	37개 강좌(생활체육20, 취미문화17)	28	488	30,770
삼성1문화센터	54개 강좌(생활체육35, 취미문화19)	37	1,050	15,051
삼성2문화센터	55개 강좌(생활체육34, 취미문화21)	36	1,034	31,002
대치1문화센터	41개 강좌(생활체육24, 취미문화17)	29	648	24,188
대치2문화센터	78개 강좌(생활체육38, 취미문화40)	44	1,137	41,975
대치4문화센터	58개 강좌(생활체육34, 취미문화24)	34	852	21,012
역삼1문화센터	51개 강좌(생활체육22, 취미문화29)	30	1,172	35,632
역삼2문화센터	44개 강좌(생활체육23, 취미문화21)	28	764	35,888
도곡1문화센터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62개 강좌(생활체육27, 취미문화35)	34	1,664	22,480
도곡2문화센터	60개 강좌(생활체육32, 취미문화28)	39	982	35,057
개포2문화센터	50개 강좌(생활체육21, 취미문화29)	37	1,207	25,654
세곡문화센터	42개 강좌(생활체육16, 취미문화26)	19	699	43,453

출처: 강남구청(2016). 2016 구정백서.

* 이용 주민은 월 평균 등록회원 수 기준임.

-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 결과, 웰빙 붐을 반영하듯 재즈댄스,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단전호흡,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층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이어트와 미용관리에 도움이 되는 종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반영할 계획임

4) 강남 문화체육통합센터 웹 서비스⁷⁾

- 강남 문화체육통합센터는 현재 문화재단의 문화센터 15개와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 5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는 강남구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임
-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인터넷 결재를 통한 수납의 편리성을 높였음. 또한 개설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강남 문화체육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센터/시설은 24곳임
- 신사문화센터, 논현1문화센터, 논현2문화센터,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청담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삼성2문화센터, 대치평생학습관, 대치1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 대치4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 역삼2문화센터, 도곡1문화센터, 도곡2문화센터, 개포2문화센터, 세곡문화센터,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⁸⁾

7) <http://gfac.gncity.or.kr/center/totalcenter.aspx>

8) <http://www.gfac.or.kr/client/art/intro.do>

다.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⁹⁾

1)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요지

- 2016년 11월 강남구 행정국장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안함. 이는 20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안이유에는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음
- 문화센터 위탁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구청장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시설은 강남구에 소재하는 신사문화센터 등 15개소이며, 각 문화센터별 강좌와 강사 현황은 아래 <표 3-3>과 같음
 - 강남구 신사문화센터 등 15개소의 위탁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3년간(2017.1.1. ~ 2019.12.31.) 재위탁하였음
 - 2016년 8월 31일 기준 위탁 관리 인력은 총 650명이며, 강좌 수는 749개임
 - 2017년 위탁금액 예산은 98억 6,086만 원임

9)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2016).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16.11.28.), 원안가결.

<표 3-3> 문화센터별 프로그램(강좌)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문화센터														
		신사	논현 1	논현 2	청담	삼성 1	삼성 2	대치 1	대치 2	대치 4	역삼 1	역삼 2	도곡 1	도곡 2	개포 2	세곡
강좌	749	47	25	37	37	56	56	42	78	53	48	45	65	71	50	39
	34 (전임)	-	2	2	-	4	2	2	4	2	4	2	2	4	2	2
강사	488	30	17	28	27	41	37	31	45	32	32	27	40	44	38	19
	34 (전임)	-	2	2	-	4	2	2	4	2	4	2	2	4	2	2

출처: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2016)

- 강남구 문화센터 운영 인력 및 강좌 수 세부현황은 <표 3-4>와 같음

<표 3-4> 강남구 문화센터 운영 인력 및 강좌수 현황(2016.8.31. 기준)

문화센터	강좌수			인력					등록인원 (연인원)
	계	체육	문화·취미	계	강사	사무직	헬스, 골프강사	용역	
15개소	749개	400개	349개	650명	488명	39명	34명	89명	111,600명

출처: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2016)

2)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 연혁

- ‘강남문화센터’의 명칭은 처음에는 ‘문화복지회관’이었으며, 2006년 10월 1일부터 ‘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위탁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작하여 2011.1.1.일자로 ‘강남구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음. 문화센터별 강남구 문화재단 위탁 연혁은 다음 <표 3-5>와 같음

<표 3-5> 강남문화센터별 위탁 연혁

일자	내 용
2004.8월	대치4, 청담, 삼성2 문화복지회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2005.1월	6개동(신사, 논현1·2, 청담1, 대치2, 세곡)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2005.6월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도시관리공단 위탁
2006.7월	대치3문화복지회관 도시관리공단 위탁
2007.7월	역삼1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 위탁
2007.12월	대치1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 위탁
2008.3.1.~2011.2.28	13개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재위탁
2009.8.20.~2011.2.28	삼성1, 도곡2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2009.10.1.~2011.2.28	개포2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2010.2.1.~2011.2.28	역삼2 문화센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2011.1.1	도시관리공단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
2011.1.1.~2013.12.31	17개소 문화센터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2012.2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2012.6.1	압구정, 청담2, 대치 문화센터 3개소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교육지원과 업무이관)
2014.1.1.~2016.12.31	강남문화재단에 재위탁 체결
2016.9.30	강남구의회에 위탁동의안 제출
2016.10.17	강남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부결
2016.11.4	강남구의회에 위탁동의안 제출

출처: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2016)

3) 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강남구청은 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의회에 제출함
 - 구청은 위탁대상 사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문화재단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함
 - 이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서를 첨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또한, 문화센터 위탁 내용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시설 유지는 위탁받은 문화재단에서, 청소 부분은 민간업체에 용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였음
- 2017년 위탁금액 예산은 98억 6,086만 1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
-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강남문화재단

1) 강남문화재단 개요¹⁰⁾

- 강남문화재단은 2008년 10월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원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됨
-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지향,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을 추구함
-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설립하고, 구립 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패션 페스티벌과 강남댄스페스티벌과 같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교육, 연구를 통해 문화전파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해 강남지역 국민의 지역 정체성을 고양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문화창조도시 건설에도 이바지 하고 있음

10)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fac.or.kr/client/art/intro.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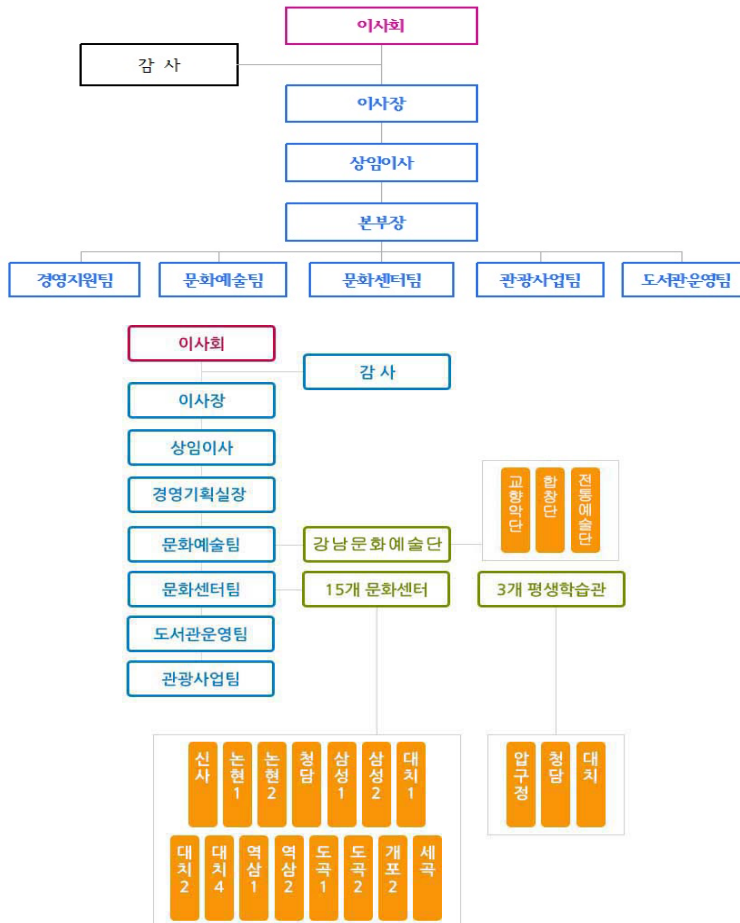
2) 강남문화재단 연혁

- 2007-1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10-30 「강남문화재단」 출범
- 2010-01-04 「도곡2문화센터 공연장」 운영 수탁
- 2011-01-01 「문화센터(17개소)」 운영 수탁
- 2012-01-01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 운영 수탁
- 2012-02-01 「스마트강남정보관 대실 및 청사관리」 운영 수탁
- 2012-06-12 「강남평생학습관(3개소)」 운영 수탁
- 2013-01-01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수탁
- 2013-02-01 「도곡1문화센터」 개관(수탁)
- 2014-06-01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수탁

3) 강남문화재단 조직도 및 급여수준

- 강남문화재단 조직도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이사단과 경영지원팀, 문화센터팀, 관광사업팀, 도서관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의 직급과 연봉은 아래 <표 3-6>과 같음
- 강남문화재단은 이사장 1인, 감사 1인, 이사 11인,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영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한 13인, 문화예술팀은 팀장을 포함한 6인, 문화센터팀은 팀장을 포함한 5인, 관광사업팀 7인, 도서관운영팀은 팀장과 관장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은 문화센터(신사, 논현1, 논현2,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2, 세곡)와 평생학습관(압구정, 청담, 대치)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 강남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강남문화재단 조직도.(검색일자: 2017.05.24.)

<표 3-6> 강남문화재단 직급 및 직위

직급		직위	비고
임원		상임이사	
일반직	3급	실장	
	4급	팀장	○ 팀장 : 직위 보직자 ○ 파트장 : 팀장 직위 미보직자
	5급	파트장	○ 파트장 : 직위 보직자 ○ 센터장 : 직위 보직자
	6~7급	직원	
사서직	5급	파트장 (도서관장)	○ 파트장(도서관장) 직위 보직자
	6~7급	직원	
기술직	4~5급	팀장(파트장)	○ 팀장 : 직위 보직자 ○ 파트장 : 직위 보직자
	6~7급	직원	
기능직	가~마급	직원	

출처: 강남문화재단 직제규정, 개정(2016.8.17.)

<표 3-7> 강남문화재단 직위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직종 / 직급		하한액	상한액	비고
임원	상임이사	58,800	68,800	
일반직	3 급	38,800	48,800	
	4 급	25,800	43,800	
일반직 사서직 기술직	5 급	22,800	35,800	하한액은 기능직 연봉 유지
	6 급	16,800	30,800	
	7 급	15,200	27,800	
기능직	가 급	22,800	35,800	일반직 5급 보수기준에 연동
	나 급	18,800	32,800	
	다 급	16,800	30,800	일반직 6급 보수기준에 연동
	라 급	16,000	28,800	
	마 급	15,200	27,800	일반직 7급 보수기준에 연동

출처: 강남문화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2016.8.16.)

4) 예산

<표 3-8> 2016년 총괄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재단 사무국	2,880	2,600	280	90%

출처: 강남문화재단 행정정보(검색일자: 2017.05.24.)

<표 3-9> 2017년 수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2016 (A)	2015 (B)	증감(C) (A-B)	증감 (C/B)
총 계	20,251,980	21,062,123	△810,143	△3.85%
자체수입	1,205,965	952,913	253,052	26.56%
사업수입	988,454	682,235	306,219	△144.88%
이자수입	217,511	270,678	△753,167	△19.64%
의존수입	16,870,715	17,599,676	△728,961	△4.14%
기본재산출연금	-	-	0	0.00%
사업예산출연금	2,822,648	2,679,045	143,603	5.36%
보조금	0	-	-	-
기부금	300,000	1,046,113	△746,113	△71.32%
위탁금	13,748,067	13,874,518	△126,451	△0.91%
이월금	2,175,300	2,509,534	△334,234	△13.32%

출처: 강남문화재단 행정정보(검색일자: 2017.05.24.)

<표 3-10> 2017년 지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2017 (A)	2016 (B)	증감(C) (A-B)	증감 (C/B)
총 계	20,251,980	21,062,123	△810,143	△3.85%
경상운영비	1,681,009	2,220,344	△539,335	△24.29%
인건비	560,398	562,560	△2,162	△0.38%
관리비	1,120,611	1,657,784	△537,173	△32.40%
사업운영비	18,103,460	17,685,884	417,576	2.36%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4,355,393	3,811,366	544,027	14.27%
지원사업	-	-	0	0.00%
대행사업비 (보조금)	13,748,067	13,874,518	△126,451	△0.91%
기본재산적립	-	-	0	0.00%
이자적립외	217,511	270,678	△53,167	△19.64%
예비비	250,000	885,217	△635,217	△71.76%

출처: 강남문화재단 행정정보(검색일자: 2017.5.24.)

<표 3-11>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사서 위탁 계약

사업명	강남구전자도서관 전자사서 위탁 운영 계약(2017년)
계약일자	2016-12-30
계약기간	2017-01-01 ~ 2017-12-31
예정가격(A)	20,862,000원
계약금액(B)	20,856,000원
계약율(%) (B/A)	99.97%
업체명	지식네트 주식회사
대표자	홍 문 표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마동3422호
수의계약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자
사업장소	강남구전자도서관
기타	

출처: 강남문화재단 행정정보(검색일자: 2017.5.24.)

<표 3-12> 강남구 전자도서관 고객지원센터 위탁 계약

사업명	강남구전자도서관 고객지원센터 위탁 용역 계약(2017년)
계약일자	2016-12-30
계약기간	2017-01-01 ~ 2017-12-31
예정가격(A)	18,200,000원
계약금액(B)	18,156,000원
계약율(%) (B/A)	99.76%
업체명	(주)다산데이터
대표자	○ ○ ○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1592-9 동산빌딩 5층
수의계약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자
사업장소	강남구전자도서관

출처: 강남문화재단 행정정보(검색일자: 2017.5.24.)

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개요¹¹⁾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음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거해 설치됨

2) 주요기능 및 역할¹²⁾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활력을 위해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11) <https://www.gncity.or.kr/index.asp>

12)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http://www.cleaneeye.go.kr/programs/user/cleaneeye/index.asp?ent_id=2007100265)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도시관리공단은 구민회관체육교실, 강남구민회관, 강남구민 체육관, 봉은테니스장,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진 체육관, 포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인 체육시설 현황은 다음 <표 3-13>과 같음

<표 3-13>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운영현황
구민회관		지하4, 지상6층	체육교실(라틴댄스, 사물놀이), 대강당 등
체육 시설	강남스포츠센터	지하2, 지상4층	수영장, 식당,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예체능교실
	구민체육관	지하1, 지상3층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등
	대진체육관	지상1층	대체육관(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봉은테니스장	3,251m ²	코트 4면, 조명탑4
	포이테니스장	1,670m ²	코트 2면, 백보드 1면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3) 공단연혁

<표 3-14> 도시관리공단 연혁

추진일자	세부내용
1997.12.2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공포(조례 제380호)
1999.07.1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인가 → 구청장
1999.09.0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창립, 위탁대행사업 개시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구립체육시설)
2000.01.01	견인 및 견인된차량 보관소 운영
2001.10.01	개포헬스장 운영
2004.01.01	공영주차시설 사후관리업무 위·수탁

추진일자	세부내용
2004.08.07	문화복지회관 관리운영 위·수탁(3개 시설) (대치4, 청담2, 삼성2문화복지회관)
2004.08.25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업체관리업무 위·수탁
2004.12.16	강남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2005.01.07	주정차금지 황색선 재도색 관리운영 위·수탁
2005.02.17	문화복지회관 관리운영(추가)위·수탁(6개시설) (신사, 논현1, 논현2, 청담1, 대치2, 세곡)
2005.02.19	강남구민회관 위·수탁
2005.06.20	압구정문화복지회관 위·수탁
2006.07.20	대치3문화센터 위·수탁
2007.07.30	역삼1문화센터 위·수탁
2007.10.01	부설주차장 위·수탁(강남구청, 국제교육원)
2007.10.15	탄천제2호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7.11.01	연북초교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7.12.24	대치1문화센터 위·수탁
2008.07.23	대치유수지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9.03.16	역삼창조길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9.08.20	삼성1·도곡2문화센터 위·수탁
2009.10.12	삼성1동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9.10.14	개포2문화센터 위·수탁
2009.10.19	대청역 공영주차장 위·수탁
2009.11.16	영희초교 공영주차장 위·수탁
2010.02.11	역삼2문화센터 위·수탁
2010.10.24	개포동 공영주차장 위·수탁
2010.12.31	문화센터 운영사업 폐지(문화재단 이관)
2011.03.01	도로굴착·복구 감독 보조업무 수탁운영
2011.04.01	구청사·구립국제교육원·가정복지시설 관리업무 수탁운영
2011.07.25	논현초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2011.11.22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수탁운영 체결
2012.03.01	일원1동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2013.11.01	대왕초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추진일자	세부내용
2013.12.19	도곡초교·신곡초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2013.12.23	강남구청 삼성로 별관 수탁운영
2014.01.01	압구정428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2014.02.03	일원동 맛의거리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2014.10.01	은마아파트 공영노상주차장 수탁운영
2015.02.01	현릉로745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015.11.01	역삼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

4) 조직과 운영¹³⁾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1본부 6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5>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정·현원

구분	정원 2013	연도별 현원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84	250	273	326	363	343	262	276	286	262	263
소계	284	207	273	326	363	343	262	276	286	262	263
임원	2	2	3	3	3	2	3	3	2	2	2
정규직	282	57	57	54	360	341	259	273	284	260	261
준정규직	-	-	-	269	-	-	-	-	-	-	-
임시직	-	148	213	-	-	-	-	-	-	-	-
소계	-	43	-	-	-	-	-	-	-	-	-
파견직원	-	-	-	-	-	-	-	-	-	-	-
인턴직원	-	43	-	-	-	-	-	-	-	-	-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3) <https://www.gncity.or.kr/about/index8.asp>

<그림 3-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직도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체육사업부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체육시설(강남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강남구민회관을 관리함
- 구체적으로 강습프로그램 개발, 편성, 운영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단임 지도직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추가 이관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

<표 3-16> 체육사업부 담당 업무

체육사업부	부서소관 업무
시설관리팀	팀업무 총괄, 사업운영목표 설정, 심사분석
	고객만족도(CS),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종합운영 계획 수립, 체육시설 홍보
	사업수입금 수납 결산 및 세입, 제세 공과금 납부, 직원 복지 후생
시설운영팀	팀업무 총괄, 시설물 위수탁, 시설물 재난·안전·환경관리
	녹색성장, 자산관리, 시설물 일상점검
	대관 및 임대차 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공헌활동, 사물함관리
구민회관	구민회관 관리운영(공연장 관리)
	구민회관체육교실 회원접수, 요금수납
	구민회관 시설관리(무대기계)
	구민회관 시설관리(무대조명)
	구민회관 시설관리(무대음향)

체육사업부	부서소관 업무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기관실 및 방재실 총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관리(음향장비, 조명설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관리(기계설비, 공조기 등)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관리(전기설비 등)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관리(영선 등)
	강남스포츠문화센터 회원안내접수, 요금수납관리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골프강습 및 지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헬스강습 및 지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강습 및 지도
구민 체육관, 포이 테니스장	구민체육관, 포이테니스장 관리운영
	구민체육관 회원안내접수, 요금수납관리
	구민체육관 헬스강습 및 지도
대진 체육관	대진체육관 관리운영
봉은 테니스장	봉은테니스장 관리운영, 테니스 강습 및 지도

출처: 부서별 안내 - 체육사업부

(https://www.gncity.or.kr/about/index8_2.asp#13)

5) 예산

<표 3-17> 경영실적 결합손익

(단위: 천원)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사업별	금액	예산과목	금액	
총계	23,246,336	총계	18,393,558	4,853,778
주차사업 (노상, 노외, 부설)	14,339,207	인건비	7,912,442	4,853,778
거주자우선주차	4,612,022			
견인 및 보관	164,749			
체육시설	914,216	기타경비	10,480,116	
구민회관	417,754			
강남스포츠헤터	2,112,794			
직장어린이집	685,594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표 3-18> 사업분야별 실적

(단위: 천원)

사업구분		연간목표	2015년 수입금	목표대비 증감액
합계		22,714,153	23,246,336	532,183
공영주차장	소계	13,800,559	14,339,207	538,648
	노상	4,570,303	4,307,713	△262,590
	노외	9,088,658	9,890,123	801,465
	부설	141,598	141,371	△227
거주자		4,604,896	4,612,022	7,126
견인료 및 보관료		204,809	164,749	△40,061
구민체육관		601,142	539,046	△62,096
기타 체육시설		266,887	375,170	108,283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2,046,400	2,112,794	66,394
구민회관	공연	146,464	160,197	13,733
	체육	283,288	257,557	△25,731
기타수입		759,708	685,594	△74,114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표 3-19> 경영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무상태	자산	4,462	3,383	3,349	3,965	2,599	2,003	1,968
	부채	3,262	2,183	2,149	2,765	1,399	803	768
	자본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예산 결산 현황	사업	세입	29,568	20,175	20,116	20,808	21,763	21,149
	예산	세출	29,568	20,175	20,116	20,808	21,763	21,149
	자본	세입	1,465	1,731	1,981	2,379	1,614	1,447
	예산	세출	1,465	1,731	1,981	2,379	1,614	1,611

출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가. 센터 개관

- 운정 복합커뮤니티(운정행복센터) 시설은 운정 1동, 2동, 3동으로 분리되어 임시건물에서 운영되었던 주민센터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 그리고 기존의 건물 기능 중심, 공간 공급 위주인 전통적인 조성체계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조성계획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공간 공급을 전제로 건설되었음
-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던 행정동(2층)을 포함한 복지동(8층), 공연동(2층)으로 구성하여 행정·문화·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5월 2일에 개청한 후 운영 중에 있음
-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20>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관

구분		내용		면적
대치위치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와석순환로 415		-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14,926㎡(4,515평)		-
건축면적		5,355.58㎡		-
연면적		29,399.88㎡(8,898평)		-
건폐율		35.88%		-
용적율		99.71%		-
건물층수		지하2층, 지상8층		-
주차대수		지하: 267대, 지상: 49대		-
부 지 현 황	행정동 복지동 공연동	지하2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5,528.41㎡
		지하1층	주차장, 공연장, 수영장, 헬스장	8,989.14㎡
		지상1층	동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연회장	5,308.69㎡

구분	내용	면적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교양교육실, 다목적강당, 예비군 중대	3,808.48m ²
지상3층	인터넷실, 회의실	1,108.28m ²
지상4층	소공연장, 당구교실, 물리치료실	1,173.14m ²
지상5층	교양강좌실, 도서실	1,154.89m ²
지상6층	멀티체험실, 음악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1,207.36m ²
지상7층	방과 후 교실, 다목적교실, 식당	1,040.83m ²
지상8층	공조실, 헬룸, 물탱크실, E/V기계실	305.67m ²

출처: http://www.pajusisul.or.kr/info/info_14_01.php

나.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

-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준공 후 2013년 5월 2일 개청하였으며, 그 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536석(1,703.23m²), 다목적홀 200석 규모(591.88m²)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3-3>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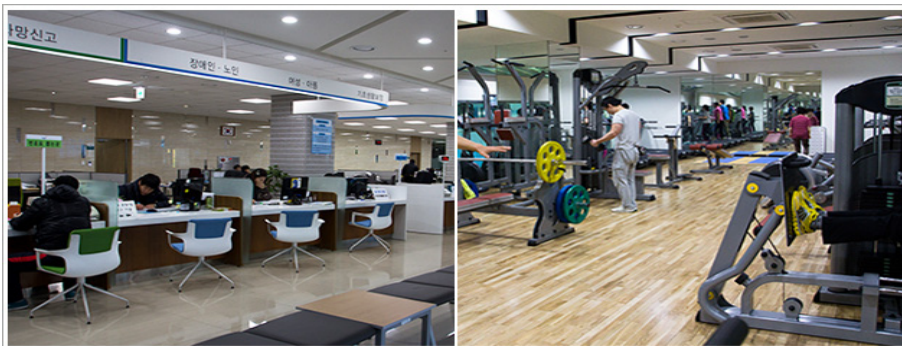
출처 : http://www.pajusisul.or.kr/info/info_14_01.php

<그림 3-4>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층·동별 안내



출처 : http://m.cafe.daum.net/cgm0519/HZaY/328?q=D_GntC-sedGP10

<그림 3-5>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주민자치센터(복지동 1층/5층)



출처 : http://m.cafe.daum.net/cgm0519/HZaY/328?q=D_GntC-sedGP10

<그림 3-6>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청소년상담센터(복지동 6층)



출처: http://m.cafe.daum.net/cgm0519/HZaY/328?q=D_GntC-sedGP10

<그림 3-7>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행정동 2층)



출처: http://m.cafe.daum.net/cgm0519/HZaY/328?q=D_GntC-sedGP10

<그림 3-8> 운정 복합커뮤니티 시설 - 파주문화원(행정동 2층)



출처: http://m.cafe.daum.net/cgm0519/HZaY/328?q=D_GntC-sedGP10

<표 3-21>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장비현황

순번	장 비 명	용량	사용처
1	2단흡수식중온수냉동기	280RT	행복센터 공연장 및 각실
2	냉각탑	700CRT	냉동기용
3	컴팩트열교환기	1,060Mcal/HR	운정행복센터 난방용
4	공조기/ 11대	11,500~30,000m³/H	냉·난방공급 및 공기조화
5	향온습습기/3대	난방:10,320kcal/H 냉방:20,250kcal/H	향·온습습용
6	비상발전기	400kw	비상전원 투입용
7	무대기계설비	구조물:38개/ 고정:5/이동식:35	공연장 공연, 행사진행용
8	무대음향설비	48채널	공연장 공연, 행사진행용
9	무대조명설비	192회로	공연장 공연, 행사진행용

<표 3-22>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대관현황(2016년 기준)

순 번	시설명	연평균 방문인원(명)			연평균 수입액(천원)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69,630	38,072	31,558	141,852	60,129	81,723
1	대공연장	50,213	32,353	17,860	105,738	51,145	54,593
2	다목적홀	19,417	5,719	13,698	36,114	8,984	27,130

다. 관리인력 및 분장사무

- 정규직 7명(기계1, 전기1, 소방1, 환경1, 무대음향1, 무대조명1, 무대기계1)
으로 구성

<표 3-23> 담당별 업무분장표

연번	직 위	직 급	분 장 사 무
1	-	일반6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시설운영총괄 ○ 운정행복센터 냉·난방 시설관리 ○ 시설물 하자처리 총괄(취합) ○ 설비자동제어 관리 ○ 청사방역 및 물탱크청소 ○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기계관리 ○ 운정행복센터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총괄) ○ 운정행복센터 사고처리 업무(총괄) ○ 운정행복센터 건축물관리(총괄)
2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전기시설관리 ○ 청소위탁업체 관리·감독 ○ 청소관련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정소기 및 비데 위탁관리 ○ 에너지관리
3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음향관리 ○ 공연장 및 지원시설물관리 ○ 통신설비 키오스크 관리운영 ○ CCTV시스템 시설관리 ○ 공연장 영상관리 ○ 공연장 대관업무보조
4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중 우수처리시설 관리·운영 ○ 폐케지 오수처리시설관리 ○ 건축물관리 ○ 물품 및 소모품관리 ○ 운정행복센터 주차관제 ○ 조정 위탁업체 관리 및 감독
5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조명시설 관리·운영 ○ 공연장대관업무 보조 ○ 공연장운영 비품관리 ○ 공연장운영 안전관리 담당 ○ 사고처리업무
6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소방시설 관리운영 ○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 승강기시설관리

연번	직 위	직 급	분 장 사 무
			○ 세콤 보안관리 ○ 산업안전보건
7	-	일반8급 (기술)	○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대관업무 ○ 공연장 무대기계관리 ○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음향관리 ○ 운정행복센터 교육사업 운영 ○ 수입금 증대계획 수립

라. 파주시 행복센터 설치 조례¹⁴⁾

1) 정의 및 명칭

- 「파주시 행복센터 설치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함
-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함
-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함
-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함
- 파주시 행복센터의 실제 명칭은 문산행복센터이며, 파주시 문산을 통일로 1680, 운정행복센터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에 위치함

14)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20호, 시행 2015.7.28.)

2) 행복센터 관리·운영

-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함
 -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짐
 -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함
- 행복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해 파주시 시장(이하 ‘시장’)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위탁하고자 할 때에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음
 - 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일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음
 -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음
 -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에 대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를 아니 할 수 있음
 -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순서에 따라 허가함
 - 또한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함
 -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3) 관련 법안

-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함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봄

4) 파주시 행복센터 시행규칙¹⁵⁾

① 위탁범위

-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의 위탁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시설물 중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 부설주차장 및 시설 유지관리, 청사건물 중 공연장
 - 파주시장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물 등

② 운영

- 행복센터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22:00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임
 -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행복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의 휴관은 아래와 같음
 -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위탁신청

- 행복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5)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경기도파주시규칙 제436호, 시행 2011.4.15.)

-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식에 따라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함
-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행복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은 행복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행복센터의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음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장은 행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함

④ 감사

-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¹⁶⁾

1) 공단설립 근거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9호를 근거로 파주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9년 6월 1일에 설립함
- 설립목표는 「지방공기업법」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거,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위탁대행사업 수입, 지출

-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주차료, 견인료, 망원경수입, 임대료수입은 전액 파주시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납입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시민회관 사용료수입 또한 파주시 일반 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납입되고 있음(조례 제17조 제2항)
- 공단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시설관리, 주차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시설비 등 비용을 공단의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파주시로부터 소요액을 지급 받아(위탁금)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은 파주시에 반납조치함(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조례 제17조)

3) 관리 시설현황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문산행복센터와 운정 행복센터가 있음. 관리부서는 사업본부 문화시설팀임
 - 문산행복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통일로 1680이며, 건립기간은 2009.07.01부터 2011.04.27까지 약 21개월이 소요됨

16) <https://www.pajusisul.or.kr/>

- 부지면적은 32,784.1㎡(9,917.19평)에 연면적은 17,848.57(5,399.19평: 지상6층, 지하1층)임

<표 3-24>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시설

용도	기능	수용능력	면적
대공연장	문화행사, 영화상영, 집회, 공연, 연주회, 연회장 등	463석 (장애인석 11석 포함)	1159.63㎡
소공연장	문화행사, 집회, 공연, 연주회	100명	230.10㎡
전시실	미술, 사진, 서예, 공예품 등	100점	299.17㎡

출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문산행복센터현황
(https://www.pajusisul.or.kr/info/info_13_01.php)

- 운정행복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임. 건립기간은 2010.05.03.부터 2012.12.21.까지로, 2013년 5월 2일에 개관함. 부지면적은 14,926㎡(4,515평)에 연면적 29,399.88㎡(8,893평: 지상8층, 지하2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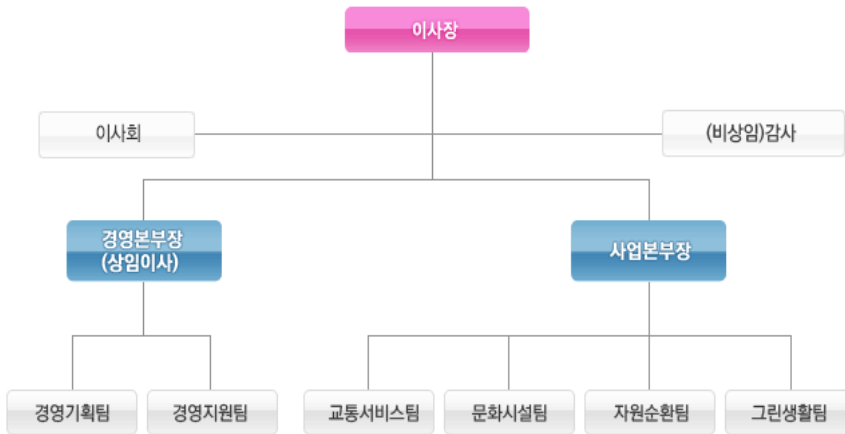
<표 3-25>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시설

용도	기능	수용능력	면적	비고
공연장	문화행사, 영화상영, 집회, 공연, 연주회 등	536석	1,703.23㎡	휠체어용/ 장애인 6석 별도
다목적홀	문화행사, 집회, 공연, 연주회 등	150석 규모	591.88㎡	의자 (이동식 설치)

출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문산행복센터현황
(https://www.pajusisul.or.kr/info/info_13_01.php)

4) 조직

<그림 3-9>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표 3-26>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현원현황(정규직)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이사장	상임이사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1급	2급	3급	4급	
107	1	1	60	1	5	10	17	11	16	45	3	10	17	15	

출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기구표 및 현원현황 (행정·기술·기능)(2017년 04월 현재 / 단위:명)
https://www.pajusisul.or.kr/intro/intro_03_01.php

<표 3-2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인력(무기계약직)

(2017년 4월 현재)

소계	청사 관리원	주차 관리원	망원경 관리원	분노 축산 관리원	콜센터 상담원	축분 음식물 관리원	종량제 봉투 관리원	환경 미화원
52	5	18	3	1	4	9	7	5

출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기구표 및 현원현황 (행정·기술·기능)
https://www.pajusisul.or.kr/intro/intro_03_01.php

<표 3-28>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 담당업무

직위	담당업무
주무관	교육문화회관 냉난방, 소방시설관리
	교육문화회관 공연장관리
	교육문화회관 승강기관리
	교육문화회관 물탱크청소관리
	교육문화회관 교육기자재관리
주무관	시민회관 냉난방, 소방시설관리
	시민회관 지방재정공제관리
	시민회관 방역, 소독관리
	시민회관 건축물유지보수
	시민회관 임대시설관리
	문화시설팀 서무업무 전반
주무관	시민, 교육문화회관 음향통신시설관리
	시민회관 영상시설관리
	시민회관 홍보마케팅관리(고객만족도조사)
	기획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홈페이지관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사업 전반
	소공연장 시설관리(정리정돈)
주무관	교육문화회관 냉난방, 소방시설관리
	교육문화회관 공연장관리
	교육문화회관 건축물유지보수
	교육문화회관 방역, 소독관리
	교육문화회관 지방재정공제관리
	교육문화회관 상근직 근태관리
주무관	시민문화회관 시설운영 총괄
	문화시설팀 경영평가업무전반
	예산관리(본예산, 추경, 조기집행)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 작성
	시민회관 대관업무전반
	시민회관 무대기계관리

직위	담당업무
주무관	솔가람아트홀 대관업무 전반
	솔가람아트홀 조명관리 및 기계관리
	솔가람아트홀 보안관리 및 사고처리업무
	솔가람아트홀 음향 및 영상관리
	솔가람아트홀 물품 및 소모품관리
	솔가람아트홀 비품 및 악기관리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시설운영 총괄
	운정행복센터 냉난방시설관리
	시설물하자처리 총괄(취합)
	설비자동제어관리
	청사방역 및 물탱크청소
	운정행복센터 재난 및 재해안전관리(총괄)
	운정행복센터 공연장무대기계관리
	운정행복센터 사고처리업무(총괄)
	운정행복센터 건축물관리(총괄)
주무관	문산행복센터 전기시설관리
	무대조명시설관리
	비품 및 소모품관리(정수기,피아노등)
	수도 광열비 상주기관 요금부과업무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소방시설관리운영
	운정행복센터 재난 및 재해대미안전관리
	운정행복센터 승강기시설관리
	운정행복센터 세콰보안관리
	조정위탁업체 관리 및 감독
	운정행복센터 건축물관리
	산업안전보건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대관업무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기계관리
	수입금증대 계획수립

직위	담당업무
주무관	중우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팩케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운정행복센터 건축물관리
	운정행복센터 물품 및 소모품관리
	운정행복센터 주차관제관리
	조경위탁처리업체 관리 및 감독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음향관리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및 지원시설물관리
	통신설비, 키오스크관리·운영
	CCTV시스템·시설관리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영상관리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대관업무보조
	운정행복센터주차관제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무대조명시설관리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대관업무보조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비품관리
	운정행복센터 사고처리업무
주무관	문산행복센터 시설운영총괄
	공연장대관업무(계약, 징수, 관리)
	예산업무
	행정일반
	문산행복센터 고객만족도조사
	임대사업장관리(카페테리아)
	문산행복센터 무대음향, 영상시설관리
	세콤보안시스템관리
	공연동, 복지동 통신시스템 일괄관리
주무관	문산행복센터 청사방역, 소변기세정제관리
	무대기계시설관리
	승강기시설관리
	건축물, 조경유지보수관리

직위	담당업무
주무관	운정행복센터 전기시설관리
	청소위탁업체 관리감독
	청소관련 비품 및 소모품관리
	정수기 및 비데위탁관리
	에너지절약관리
주무관	문산행복센터 냉난방 및 기계시설물관리
	청소위탁업체관리
	소방시설관리
주무관	음식물[80톤] 처리시설기계관리
	음식물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보일러시설 가동 및 관리
	탈취시설 운전지원
주무관	시민회관 대관업무 보조
주무관	시민, 교육문화회관 전기 및 조명시설관리
	시민회관 승강기시설관리
	시민회관 물품 및 소모품관리
	시민회관 청소용역관리감독
	시민회관 자원봉사관리
	대공연장 시설관리(정리정돈)

출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현황

(<https://www.pajusisul.or.kr/html/index.php?code=142&mode=>)

3.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가. 마포구 문화진흥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제8조 (문화진흥과)에 따르면, 제6항에 마포아트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을 문화진흥과장이 담당한다고 규정함¹⁷⁾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667호, 시행 2016.10.27.)

-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⁸⁾,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¹⁹⁾와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²⁰⁾에서 마포아트센터의 목적, 사용료, 운영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나. 마포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함. 이 재단은 민법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됨
- 재단의 사업은 1.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등임
-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됨
-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979호, 2014.11.2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조례 제1095호, 일부개정 2017.04.20.)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664호, 2016.06.30.)

<그림 3-10> 마포문화재단 조직 및 기구



출처: (재)마포문화재단 (<http://www.mapoartcenter.or.kr/>)

<표 3-29>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부서	주요업무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 총괄
경영지원팀	팀 총괄
	인사, 급여, 교육
	시설, 건축물 운영 관리
	계약, 지출, 결산 예산
	물품관리
	복무, 복지, 총무
	이사회, 행사, 총무
고객지원팀	임원보좌
	팀 총괄
	독서실, 셔틀버스
	안내데스크, 환불
	안내데스크, 수입금
	안내데스크

부서	주요업무
생활체육팀	팀 총괄
	대체육관(대관) 생활스포츠커뮤니티 기획 및 운영
	수영장, 지역연계사업 기획 및 운영
	헬스 및 퍼스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소체육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골프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연전시팀	팀 총괄
	공연기획
	공연기획, 구립합창단
	공연기획, 예술단체 관리
	공연전시기획
	대관, 하우스
	하우스 매니저
	공연예술공간 관리
	기술업무 총괄, 무대음향
	무대조명감독
	무대기계감독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지역문화팀	팀 총괄
	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생활문화 커뮤니티 사업
	꿈의극단 기획운영
	꿈의합창단 기획운영
문화교육팀	팀 총괄
	유아체능단, 유아교육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꿈의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홍보마케팅팀	팀 총괄
	전산, 홈페이지, 프로모션
	언론홍보, 유료회원제
	티켓마스터
	온라인홍보, 티켓매니저
	티켓매니저

출처: 마포문화재단 (<http://www.mapoartcenter.or.kr/>)

<표 3-30> 마포재단 예술단

구분	단체명
연고 예술단	와이즈발레단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
	애오개 본산대 놀이 보존회
구립 예술단	마포구립합창단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

출처: 마포문화재단 (<http://www.mapoartcenter.or.kr/>)

다.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개요

1) 목적 및 인력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는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마포구청장의 책임 하에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에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둠
-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센터의 위탁운영

- 시행규칙 제5조(위탁운영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수탁자)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모집이 원칙임

-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재위·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함. 재위탁의 경우에도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음
-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6조(위탁운영 신청)에 따르면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위탁 운영서를 가지고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 1부
 -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8조(예산 및 결산)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제9조(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10조(사무편람)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제11조(수탁자의 의무)에 따르면,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함
 -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인수 인계해야 함
 -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으로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함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운영위원회

○ 제13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됨.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함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명
- 교육계 또는 언론계 인사
-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인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임기)에 따르면,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할 때
-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함.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5조(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제17조(회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제18조(의견청취)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제19조(간사 및 서기)에 따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둬. 간사는 문화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진흥과 문화기획팀장이 됨
-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함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의 직·성명
 -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강남구, 파주시, 마포구)

- 서울시 강남구 문화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조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시설 사용료, 시설사용료 할인(대상) 및 반환, 운영시간을 비교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²¹⁾²²⁾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²³⁾²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징수 조례²⁵⁾²⁶⁾²⁷⁾

1. 시설의 사용료 비교

가. 강남구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용료 등)에는
 -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함
- 수강강좌는 일반강좌, 특화강좌, 정예강좌, 골프강좌, 헬스강좌로 구성됨.
각 수강료는 4주 단위 1회 1시간을 기준한 금액이 공시됨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48호, 2016.05.1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2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220호, 2015.07.28.)

24)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제1095호, 2017.04.20.)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664호, 2016.06.30.)

- 일반강좌는 통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모집정원이 20명인 강좌를 말함
- 특화강좌는 실습강의가 짧게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지도가 일부 병행되어 다수 인원을 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강좌로, 모집인원은 13~18명 내외임
- 정예강좌는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강좌로,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를 말함
- 골프 연습장과 헬스장은 레슨을 제외한 각 1회 이용권이 책정되어 있음
- 대관료를 받는 시설은 체육문화 취미교실, 음악연습실, 문화센터 대강당으로 1시간당, 2시간당 1회 가격이 책정되어 있음

<표 3-31>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

구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골프강좌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헬스강좌	-	-	30,000원	-	-	45,000원
이용료	골프연습장	1회 이용권 10,000원(레슨제외)					
	헬스장	1회 이용권 4,000원(레슨제외)					
대관료	체육·문화· 취미교실	1회(1시간) 30,000원 ~ 60,000원					
	음악연습실	1회(1시간) 10,000원 ~ 30,000원					
	문화센터 대강당	1회(2시간) 70,000원 ~ 350,000원					

구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비고	○ 각 프로그램 수강료는 4주 단위 1회 1시간 기준 금액임 ○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정원미달일 경우에 한정함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통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교육(실습)이 가능한 강좌로 모집정원이 20명 이상인 강좌 - 특화강좌 : 실습강의가 짧게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지도가 일부 병행되어 다수의 인원을 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강좌 또는 강좌의 특성상 모집정원이 13명~18명 내외인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음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음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나. 파주시 운정 행복센터 시설사용료²⁸⁾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에 따르면,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함
- 기본시설 사용료에 따르면,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함
 - 오전(3만원), 오후(4만원), 야간(5만원)으로 각각 사용료가 다르며, 주말에는 비용이 만원씩 추가됨

28) 동 조례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표 3-32> 파주 행복센터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기준시간		평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2:00~18: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2:00~18: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

<표 3-33> 파주 행복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항목		기준	사용료	비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 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재생기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테이프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다.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일반기준

-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
-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를 할증 적용함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함
-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름
-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기본대관료의 100%를 적용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평일 낮 공연은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20%를 할인 적용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공연은 기본대관료에서 20%를 할증 적용함
-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단, 대관사용자가 사전 대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함
-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음
-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 시 기본대관료는 20% 할인 적용함
-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30%를 할인함
- 2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2) 시설사용료 개별기준

<표 3-34>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구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625,000	1,000,000	1,250,000	1,500,000	1,750,000

<표 3-35>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구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250,000	312,500	375,000	500,000	625,000

<표 3-36>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분	기본사용료
대관료	50,000원/1시간

<표 3-37>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소체육관 사용료

구분	사용료
대관료	10,000원/1시간

<표 3-38>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그 밖의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료	
스튜디오1(다목적홀)	30,000원/1시간	
스튜디오2(문화동 2층)	30,000원/1시간	
스튜디오3(문화동 3층)	연습	35,000원/1시간
	공연	55,000원/1시간
	행사	85,000원/1시간
	전시	150,000원/1일
연습실	15,000원/1시간	
전시실(갤러리 맥)	15,000원/1시간	

<표 3-39>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주차료

구분		주차료
일반차량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		-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	대극장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소극장	- 차량 3대까지 무료
	체육시설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 조례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무료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 (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 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비교

1.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함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함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할인(면제)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면제)함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일반기준

-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4)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개별기준

<표 3-40>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원/월)

구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4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이하	25,000 ~ 200,000
유아·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유아체능단		60,000 ~ 340,000
문화예술전문과정		40,000 ~ 200,000
기타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 별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기준

<표 3-41>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이용료

(단위: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그룹지도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단, 일요일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 할증			

<표 3-42>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헬스

(단위: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지도	개인지도	1일입장
사용료	35,000~ 50,000	25,000~ 45,000	100,000 ~ 200,000	25,000~ 50,000 (1시간/회)	3,000~ 10,000
기타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 입장은 20% 할증				

<표 3-43>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실내골프

(단위: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1일입장	
				기본 1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100,000	30,000~100,000	100,000~150,000 (1시간/1회)	4,000	2,000
기 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 입장은 20% 할증				

<표 3-44>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독서실

구 분	성 인	중 고 생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1일사용료	1,000원	500원

라. 3개 사례 비교

○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 수강료는 일반 강좌를 기준으로, 주 1회 1시간 기준 12,000원임
-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1회 10,000원
- 헬스장 이용료는 1회 4,000원

- 대관료는 취미교실은 1회(1시간) 30,000~60,000원
- 음악연습실은 1회(1시간) 10,000원~30,000원
- 문화센터 대강당은 1회(2시간) 70,000원
-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함. 소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오전(09:00~12:00) 30,000원, 오후(12:00~18:00) 40,000원, 야간(18:00~22:00) 50,000원임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각각 10,000원씩 추가됨
-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는 평일 기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 체육시설은 1회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함
 - 대공연장(아트홀 맥)의 경우, 클래식, 국악(625,000원),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1,000,000원), 뮤지컬, 대중공연(1,250,000원), 방송(촬영) (1,500,000원), 행사(1,750,000원)임
 - 종합체육관은 50,000원(1시간), 소체육관은 10,000원(1시간)임
 - 그밖에 스튜디오(30,000원), 연습실(15,000원), 전시실(15,000원) 등이 있음
 - 주차료 또한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의 비용을 징수함
- 마포구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월 10,000원~40,000원 수준으로 저렴함
 - 그밖에 수영은 강습료가 25,000원~80,000원 선임
 - 헬스는 일반 사용료가 35,000원~50,000원(월비)임
 - 실내골프는 정기 월 사용료가 55,000원~100,000원임
 - 독서실은 성인 기준 월 사용료 30,000원임

2. 시설 사용료 할인(대상) 및 반환

가. 강남구 문화센터 감면 및 반환

1) 수강료 감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감면 및 반환)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는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는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50% 감면
- 구청장은 구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음. 단, 구민은 수강등록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 50%는 가.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임
 - 30%는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10%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3세까지)
-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음
 - 3강좌 이상 수강 시(3번째 등록강좌부터 감면 적용) 10% 감면
 -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10% 감면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5% 감면
- 위 사항의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함

2) 대관료 면제 및 반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관료 면제 및 반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50% 반환
 - 사용예정일 1~3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20% 반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 행위
 - 정치·종교단체의 집회 또는 정치·종교단체와 관련된 행사(다만,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문화센터 관리·유지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징수납입)에 따르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강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함

나. 파주시 운정 행복센터 사용료 반환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반환)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음
 -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
 -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
 -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
- 조례 제7조(사용료 반환 청구)에 따르면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행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반환

1) 사용료 징수 및 반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따르면, 제7조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인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아래와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
 -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 국가, 공공단체가 직접 국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
 -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
 -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계약 체결 시 납부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75% 반환
 -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
 -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전액 반환. 다만 계약금은 제외함

- 조례 제13조의2(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환)에 따르면, 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강습료등”)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제15조에 따라 강제퇴출자의 강습료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

2) 사용료 할인

- 조례 제13조의3(할인)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함.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도록 함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라. 3개 사례 비교

- 강남구 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은 아래와 같음
 -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해서 5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3자녀 이상 50%, 미취학 아동 30%,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의 경우 10% 감면
 -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 1년 이상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10% 감면
 - 6개월 이상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5% 감면
 - 대관료 면제 및 반환은 아래와 같음
 - 강남구 주최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주관행사
 - 재해나 사용예정일 7일~1일전 전액~20%까지 반환
-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반환은 아래와 같은 상황임
 - 천재지변 전액, 30일전~개시일은 전액~30%까지 반환
-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음
 - 구 또는 마포구 의회 주관 행사 및 국가 및 공공단체 행사
 - 천재지변, 센터 사정 취소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1일 전까지면 전액~50%까지 반환
 -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음
- 50% 범위 내의 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임
 -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3개월분 동시 등록자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3명 이상, 어르신

3. 운영시간의 비교(주중/토·일요일)

가. 강남구 문화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시간 등)에 따르면,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일 06:00 ~ 22:00
 - 토요일 06:00 ~ 18:00
 - 일요일·공휴일 등은 휴관으로, 근로자의 날 및 공직선거일 등 포함함
- 문화센터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강당의 경우 2시간,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은 다음과 같음
 -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함
 -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 이용은 평일 사용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음
-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나.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의 사용시간에 대한 조례 항목은 없음
- 다만, 기본시설 사용료 부문에 사용기준시간이 나와 있어 이를 근거로 운영시간을 유추할 수 있음. 대공연장은 오전에는 9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사용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음

<표 3-45> 파주 행복센터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기준시간		평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2:00~18: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2:00~18: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

다.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9조 (사용시간)에 따르면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때,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조례 제10조(시설의 개방)에 따르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 제1항에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
 -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라. 3개 사례 비교

- 강남구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 평일 06:00 ~ 22:00
 - 토요일 06:00 ~ 18:00
 - 일요일·공휴일 등은 휴관으로, 근로자의 날 및 공직선거일 등 포함함
- 파주 행복센터의 운영시간 조항은 없으나, 기본시설 사용료 부문에 사용기준 시간이 나와 있어 이를 근거로 운영시간을 유추할 수 있음
 - 대공연장은 오전에는 9시부터 야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
-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함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4. 복컴 유사시설 관리·운영의 시사점

가. 파주시 사례

- 운정행복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리·운영 주체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임
 - 일부 시설은 개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헬스장 - 주민자치위원회, 수영장 - 코오롱스포츠, 체육관 - 청소년문화의집 등)
-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관리의 범위를 살펴보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청소업체관리, 하자보수, 임대·수익시설 관리, 공공요금 징수 및 시설유지·보수(예산집행) 등임

- 시설의 휴일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관과 수영장은 격주로 평일에 1일 휴관하며, 다목적홀·공연홀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휴일에도 개방(월요일만 휴관)하고 있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 센터·헬스장은 주말에 개방하지 않음
 - 주말 이용요금에 평일 보다 20~30% 비싸며, 주말 1시간 이용기준 20~40 만원 정도 소요됨
-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시설 운영·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시청에 요청하면 시는 전출금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17년 예산 991백만원)
 - 연간 약 2억(카페테리아 3천만 원, 농협 2.5천만 원, 뷔페 8천만 원, 대관료 6.6천만 원) 원의 임대·대관 수익이 발생하나, 전액 파주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편입되고 있음
- 인력배치를 살펴보면, 동사무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전출금 정산 등) 담당자 1명(전기직)을 배치하고 있으나, 시설 관리·운영 업무는 시설공단 직원 7명이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용역업체 위탁·관리, 시설물 하자처리 및 유지보수, 공연장 등 대관, 소방·기계 관리, 비품 구입 등을 들 수 있음
 - 주말 개방은 당직근무를 통해 7명이 순환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파주시 복검은 관리와 운영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운영은 입주시설별로 담당하도록 함
 - 그러나 일부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예: 시설관리, 청소영역 등)
 -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인력부족 등으로 휴일에는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예외 시설 없이 관리와 운영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책임소재는 명확한 편이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시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되어야 함

나. 강남구 사례

- 서울시 강남구는 총 22개의 동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15개 복합청사(문화센터, 동사무소 포함)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센터는 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통합),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회의와 지역사회 봉사 위주의 활동만 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은 없음
- 아직 복합청사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7개동은 리모델링 전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복합청사로 변경되면 강남문화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임
- 강남구의 경우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참여는 어려운 편임
-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고려한 이용료 현실화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민원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제3절 충청지역 자치단체의 시설별 이용요금체계 비교

1. 대전광역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대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표 3-46> 대전광역시 시설유형 및 이용요금

시설	유형	규모 및 주요시설	이용요금	이용 기준
월드컵 경기장	대강당	- 수용규모 : 120명(214㎡) - 주요시설 : 회의용 의자, 음향 등	- 회의장별 100,000원 - 음향시설 60,000원 - 부속시설사용료(공과금 등) ※ 토·일 및 공휴일 이용 시 100분의 50 가산	-
	중 회의실	- 수용규모 : 60명(107㎡) - 주요시설 : 회의용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음향 등	- 전용사용료 1회 4시간 80,000원 - 시설사용료 - 마이크 1회 기본료 30,000원+개당 5,000원, 냉난방료 30,000원 - 입장권 : 어른 200원, 어린이 100원	
	분임 토의실	- 수용규모 : 100명 - 주요시설 : 회의용 책상, 의자	40,000원(4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100/25 가산	
국민 생활관	소강당	- 수용규모 : 154석 - 주요시설 : 관람석 의자, 빔프로젝트		1회 4시간
기성 종합 복지관	세미나 실	- 수용규모 : 200명(229㎡) - 주요시설 : 의자, 회의용 탁자, 빔 프로젝터, 음향 등		4시간

2. 청주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시설대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가. 상상마루(컨벤션홀)

<표 3-47> 청주시 상상마루 사용료

구분	사용요율(1일 m ² 당)		납부금액	비고
사용료	기준가	300원	486,000원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5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표 3-48> 청주시 상상마루 설비 사용료

구분	단위	요율	납부금액	비고
시설관리 예치금	-	-	공간사용료 총액의 30%	-
설비 사용료	전기	Kwh	100	실사용량
	공동시설	m ² , 일	-	공동부담(면적당)
	냉난방비	m ² , 일	-	공동부담(면적당)
	IP	Address	22,000	-

나. 에듀피아 영상관

<표 3-49> 청주시 에듀피아 영상관 사용료

구분	사용요율 (4시간)		납부금액	비고
사용료	기준가	250,000원	250,000원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5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다. 나눔마당 회의실

<표 3-50> 청주시 나눔마당 회의실 사용료

구분	사용요율(4시간)		납부금액	비고
사용료	기준가	100,000원	100,000원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5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동시통역실 사용 시 20만원 별도 부과			

라. 멀티미디어스튜디오

<표 3-51> 청주시 상상마루 설비 사용료

구분		VR스튜디오	영상편집 스튜디오	음향녹음편집 스튜디오	사진촬영 디지털인화 스튜디오
사용료	2시간	-	-	20,000원	20,000원
	4시간	50,000원	40,000원	30,000원	40,000원
	8시간	100,000원	80,000원	60,000원	80,000원

※ 단지 입주기업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료 감면

마. 직지룸(다목적실), 아카데미실, 콘텐츠개발실

- 사용료는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3. 천안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 천안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대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가. 이벤트홀

<표 3-52> 천안시 이벤트홀 사용요금

기준		평일	토·공휴일	비고
주 간	일 반	130,000	160,000	• 214석 • 사용기준 : 1회 • 주간 - 09:00 ~ 13:00 - 14:00 ~ 18:00 • 야간 - 19:00 ~ 23:00 • 연중 무휴 / 부가세 별도
	영향지역	65,000	80,000	
야 간	일 반	195,000	240,000	
	영향지역	97,500	120,000	
음향시설		1회당(4시간)	기본 사용료(30,000원) + (5,000원×마이크 라인 수)	
통신시설		1회당(4시간)	빔스크린 5,000원 / 빔프로젝트 10,000원/ 노트북 10,000원	
냉·난방비		1회당(4시간)	20,000원	

4. 공주시 시설유형별 규모와 이용요금

- 공주시의 문예회관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시설대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가. 문화시설 현황

<표 3-53> 공주시 문화시설 현황

시설명	대지면적(㎡)	건물면적(㎡)	수용인원	시 설 현 황
문예회관	9,840	3,825	768명	대공연장 : 649석 소공연장 : 119석
고 마	71,294	6,123	1,261명	컨벤션 : 441명 리셉션 : 212명 세미나실: 508명 전시장 : 100명

출처 : 고마 홈페이지 (<http://artgoma.co.kr>)

나. 문예회관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표 3-54> 공주시 문예회관 기본시설 사용요금

기 준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 연 장	대공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시간 구분 기준 별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1시간 단위로 20%를 가산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표 3-55> 공주시 문예회관 부대설비 사용료

품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60,000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함 • 그랜드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 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 중에서 선정 실시함 • 단,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2급 조율사 자격을 가진 자 이상이 함 • 「드라이아이스, 포그머신」 재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함 • 부대시설 사용은 기본시설 사용 시에 한함 • 음향반사판 사용 시 무대기계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음
	중형			
	업라이트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기계		1회	40,000	
오케스트라펍트		1회	20,000	
합 창 단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포그머신		1회	10,000	
음향	음향반사판	1회	6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추가1개당			
무선마이크		개당/1회	5,000	
빔 프로젝트		대공연장/1회	20,000	
소공연장/1회		10,000		
분 장 실		실당/1회	20,000	
게스트룸		1회	15,000	

3) 냉·난방 사용료

<표 3-56> 공주시 문예회관 냉·난방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봄
소공연장	1회	3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봄

4) 기타 사용료

<표 3-57> 공주시 문예회관 기타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봄
T.V녹화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T.V중계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라디오 중계료	1회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아치 설치료	1회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현판 및 현수막설치료	1회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녹 음 료	1회	10,000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

다. 고마

1) 회의실 사용료

<표 3-58> 공주시 고마 회의실 사용료

(단위:천원)

구분		면적(m ²)	오전(09~12)	오후(13~17)	야간(18~21)	1일(09~21)
컨벤션홀	1	181	271	362	271	868
	2	182	273	364	273	873
	3	187	280	374	280	897
	전체	550	825	1,100	825	2,640
리셉션홀			264	396	528	396
세미나실	1	90	135	180	135	432
	2	92	138	184	138	441

구분		면적(m²)	오전(09~12)	오후(13~17)	야간(18~21)	1일(09~21)
	3	99	148	198	148	475
	4	92	138	184	138	441
	5	63	94	126	94	302
	6	87	130	174	130	417
	7	109	163	218	163	523
향토역사 자료실	1	51	61			
	2	66	79			
	3	63	75			
	4	54	64			
문화학습 체험실	1	50	60			
	2	20	24			
	3	48	57			
역사인물전시관		117	140			
*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 가산 *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함 * 사용자 귀책사유 예약취소 - 5일전 전액환급 - 2일전 10% 공제 - 1일전 20% 공제 - 당일 30% 공제 * 사용전 전액 납부 - 신청서, 감면신청서 제출				* 사용료 감면 - 전액 1. 공주시 주최/주관 (보조금사업자는 공주시 주관이 아님) 2. 국가 또는 충청남도 주최/주관 - 30%감액 1. 20명 이상 사이버공주시민증 제시 2. 50명 이상 한옥마을 숙박 3.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별도

2) 다목적전시장 사용료

<표 3-59> 공주시 고마 다목적 전시장 사용료

(단위: 천원)

구분	면적(m ²)	1일
전시장	140	168
* 사용료 감면 - 30%할인 : 1월, 2월, 12월 - 40%할인 : 7월, 8월		

※ 부가가치세 별도

5. 자치단체별 유사시설 사용료 비교

-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주중과 주말 사용료 차등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규모, 이용시간대, 주중과 주말·공휴일 구분 등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사용료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치단체별 시설 사용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60> 자치단체별 유사시설 사용료

자치단체	구분	사용료	비고	특징
대전광역시	대강당	100,000원	4시간 기준	주말·공휴일 가산
	중회의실	80,000원	4시간 기준	-
	분임토의실	40,000원	4시간 기준	1시간 초과시 가산
청주시	상상마루	486,000원	1일 기준	초과시 시간당 5만원 추가
	영상관	250,000원	4시간 기준	
	회의실	100,000원	4시간 기준	
천안시	이벤트홀(주간)	130,000원	1회 기준	오전/오후로 구분 주말 요금 차등화
	이벤트홀(야간)	195,000원	1회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공주시	대공연장(오전)	80,000원	3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대공연장(오후)	100,000원	4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대공연장(야간)	120,000원	6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소공연장(오전)	40,000원	3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소공연장(오후)	50,000원	4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소공연장(야간)	60,000원	6시간 기준	주말 요금 차등화

제4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 비교

제1절 관리방식의 비교

제2절 관리방식 선택(안)

제3절 공단위탁 시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4절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5절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제 4 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 비교

제1절 관리방식의 비교

- 공공서비스에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그 성격상 사회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의미함
- 기본적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했으나, 오늘날 큰 정부에 대한 비판과 효율성, 능률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서비스 주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급주체의 구분에 따라 크게 직영공급, 공단위탁, 민간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직영방식

가. 직영방식의 의미

-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직영공급이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가장 오래된 경영형태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공무원’을 통해 직접 경영하는 유형을 의미함
-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서비스 공급결정자와 생산자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공급되는 방식인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간접방식(공단위탁)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 직영기업은 직영방식으로도 불리며, 지자체에서 사업본부, 사업단(소), 국·과 조직과 같이 관료제적 방식으로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나. 주요내용

- 직영공급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분류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 Savas(1987)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크게 물리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이 강한 경성서비스(hard service)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연성서비스(soft service)로 나누었을 때, 후자가 보다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가 어렵기 때문에 직영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경성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쓰레기 수거, 거리 보수,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성과기준이 비교적 명확함
 - 반면, 치안, 소방, 교도소,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에 해당하는 연성서비스의 경우 성과기준이나 계약요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려움

다. 직영공급의 장·단점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정부 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임
- 반면, 관료주의로 인한 경직성과 비전문성 등이 직영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등의 공급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한편, 오늘날 민간위탁이 직영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나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불완전한 시장 환경, 대리인문제,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다시 직영방식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있음

- 직영 전환의 경우, 경쟁적 입찰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임
- 민간기업의 경우 고객선별이나 대민서비스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함
-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함

2. 공단위탁

가. 공단위탁의 의미

- 공단위탁이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가운데 지방정부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지방공사 및 공단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방식 가운데, 지방정부가 직접 관료조직을 구성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방식과는 달리 공단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외 지방공사 또는 공단 등을 설립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고, 해당 단체를 관리하는 간접방식에 해당함

나. 주요내용

- 2006년 기준 공단위탁 방식의 서비스전달 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직영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그 증가율이 200%를 육박하고 있으며, 지방공단의 개체 수와 사업범위의 확대, 인력 및 예산 규모의 증가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지방공단의 증가 추세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축소 노력과는 상반되는 추세로 주목할 만한 현상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방식으로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방식이 경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단위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

-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며, 5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외의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음
 - 지방공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민간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법인을 일컬음
 - 이때,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만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짐

다. 공단위탁의 장·단점

- 공단위탁의 최대 장점은 예산절감 효과와 경쟁의 도입 등 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동시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부실패의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분야의 조직,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
- 독점시장을 타파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기존 정부가 지닌 시장은 독점시장으로 지대추구(rent seeking)와 같은 사회적 낭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단이 수탁하여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언제든지 민간 또는 자치단체로 공급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의 독점적 위치와는 달리 경쟁적 상황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쟁 가능성을 지니게 됨
- 공공서비스 공급을 직영공급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가지는 통제 메커니즘에 의해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가 해결되며, 공단은 그 자체로 공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위임자-대리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봄

-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에 대한 감독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및 공단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공기업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됨
-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따라 감독권 및 예산권, 수익금의 처리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체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하고,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위임자-대리인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감사와 경영평가, 자치단체 관리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기업의 업무에 관여함으로써 관리·통제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음

3.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의의

- 정부가 수행해 오던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일컫음
 -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입찰과정을 통해 정부 대신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하도록 함
 - 민간위탁 체제에서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게 되지만,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임
- 공급주체의 변동이라는 점에서 민영화와 비슷한 점을 보이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계약은 정부와 민간업자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업자와 서비스 수혜자(시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띠게 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1987년 Savas의 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는데, 그 논의는 2000년 기점으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전에는 민간위탁의 당위성, 중요성,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규범적·이데올로기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민간위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음
 - 2000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반하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결과와 더불어 민간위탁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연구들이 나타남. 민영화가 과연 실질적인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회의감, 또는 적절한 정책과 지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용 증가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음
 - 주요 비판 내용은 과연 민간위탁이 실제 정부 성과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가 효율성 향상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는지 등이며, 특히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에 있어 경쟁 또는 서비스 종류, 지역의 차이, 정부의 제약능력, 모니터링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둠
- 한편, 민간위탁에서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의 계약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운영방법에 따라 서비스 계약, 관리운영 계약, 임대차 계약과 양여권 계약으로 구분됨
- 먼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이란 지자체가 기본적인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가지되 특정한 서비스만을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의미함
 - 예를 들면, 공공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인건비만을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설 유지비·공공요금·일반수용비·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직영하되, 일부 전문분야는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서비스 계약 방식은 각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업체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서비스 제공체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의 수탁자가 상이하여 서비스의 제공·조정이 곤란하다는 특징을 보임

- 관리운영 계약(management contract)이란 수탁자가 인력관리, 시설유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 등 소요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있음. 즉, 소수의 공무원이 일정한 액수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총괄적인 지도·감독만 하고, 나머지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임
 - 이는 민간의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많이 흡수한다는 면에서 경영능률의 달성 효과가 크지만,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임대차 계약(lease contract)이란 현재의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대로 두고 인력이나 시설관리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임
 - 임대차 계약은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하여 최고가의 사용료를 제시한 수탁 예정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하는 것으로, 최소의 경비로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탁하는 경우임
 - 흑자 운영이 계속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음
- 양여권 계약(concession)이란 고정자산은 공공부문의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되나 양여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까지 민간에게 양여되는 방식임
 -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은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함
 - 이는 민간위탁의 여러 유형 가운데 민간의 책임과 자율성 수준이 가장 높고 민간자본의 필요도 수준 역시 가장 높다는 점이 특징임

다. 민간위탁의 장·단점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는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의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수행하게 하여 정부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분야의 조직·비용·인력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즉, 기존의 정부가 지닌 독점적 지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시설,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특히, 각각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민간부문이 민간위탁을 담당하므로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일률적인 공무원 채용과 달리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민간위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는 공공성의 상실, 책임성의 문제, 독과점, 고객비용 발생과 같은 시장실패적 요소들을 들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며, 고객들을 선별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민간부문이 수지에 맞는 고객들만을 상대하고자 하고, 그 이외의 고객들을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정부와 민간업체 간의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사무의 운영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호하고, 이때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해당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이 입게 되므로 시민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함

-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기간산업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을 만족하는 입찰자들이 여러 명 나타나는 이상적인 경쟁시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나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독과점기업이 민간위탁을 담당하게 되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독점이나 과점이 발생한 경우 수탁 사업체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주로 대기업 위주로 민간위탁이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공급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에게 비용 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는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수탁업체에게는 계약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수요자에게는 비용절감이 아닌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민간위탁의 결과로 나타난 비용감소가 반드시 그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
 -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은 서비스 공급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환원되고, 실제 서비스 수요자들은 원래 약정된 비용을 그대로 내거나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고객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제2절 관리방식 선택(안)

1. 관리방식 평가기준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관리방식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법적 적합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공공성, 자율성, 전문성, 능률성, 통제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적 적합성은 현행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별 관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대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직, 인력 등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함. 개별 관리방식별로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기준임
 - 공공성은 관리방식 중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관여 가능성이 높을수록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율성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시설, 프로그램 등 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하며, 이 기준은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전문성은 각종 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 경험 등을 갖추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능률성은 원래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함. 민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능률성 제고가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제가능성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법적인 차원에서 통제가 보장되는 항목과 수준에 따라 달라짐
 - 지속가능성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2. 관리방식 평가결과

- 건설경제연구원(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편의 증진 등 유기적인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직영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을 3가지 기준(공공성, 대응성 및 전문성)에서만 평가하여 직접운영을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방식은 공단위탁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복컴의 건립 목적과 시설 이용 현황²⁹⁾을 볼 때, 수익성 창출 보다는 주민복지 증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성의 성격이 강함
 - 직영방식은 공공성과 통제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복컴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인력확보 측면에서 행정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편임
 - 복컴을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사 사례로는 정부합동청사 고양지소를 들 수 있음

<표 4-1> 직영 시 예상 소요인력 추정을 위한 사례

구분	주요내용
규모	• 연면적 12,560㎡
인력	• (관리인력) 4명(소장 제외)
업무	• 건축·기계·전기·승강기 용역 발주 및 관리(1명) • 서무 및 국유재산 관리(1명) • 조정·청소·소방·경비 발주 및 관리(1명) • 통신·회의실 운영·시설대관(1명)
복컴 소요인력	• 복컴별 최소 관리인력 4명 필요 • 향후 32개 복컴 준공 시 총 128명 정도 인력 소요 예상

29) 주민센터 38.8%, 도서관 28.3%, 문화의집 12.2% 순으로 이용률이 높음

(출처: 행복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컴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행복청, '16.12.)

- 민간위탁은 자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공공성과 통제가능성이 낮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복컴의 특성상 공공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어려움

<표 4-2> 복컴별 세외수입 현황(2016년 결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유지관리비(A)	수입액(B)	비율(B/A×100)	비고
한솔동	707,703	-	0%	
도담동	870,351	1,845	0.2%	
아름동	897,488	45,864	5.1%	
종촌동	794,608	-	0%	

* 수입액은 중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외, 공유재산 임대료만 반영

- 공단위탁은 공공성과 통제가능성 측면에서 직영방식과 유사하지만, 직영 방식보다 자율성, 전문성, 능률성 확보가 유리하며, 특히 인력확보 측면에서 행정적 실현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민간위탁보다 통제가능성이 높아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며, 무엇보다 수익성이 요구되지 않는 대행사업이 가능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음

<표 4-3> 기준별 관리방식의 적합성 평가

관리방식 기준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법적 적합성	●	●	●
행정적 실현가능성	×	●	○
공공성	●	○	×
자율성	△	○	●
전문성	△	○	●
능률성	△	○	●
통제가능성	●	○	×
지속가능성	●	●	△

* 주: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다만,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사업별 수지 및 조직·인력 분석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함으로 2018년까지는 직영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1생활권과 3생활권 복컴이 모두 준공(2018년)된 이후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단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단위탁 시 타당성 검토 또는 인력·조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표 4-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정안전부)

구분	주요내용
타당성 검토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설립 시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적정성, 수지분석, 조직·인력 분석 등) 실시
인력·조직 적정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대행사업으로 인해 정원이 증가(4명 이상)되는 경우는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함

제3절 공단위탁 시 합리적인 운영방안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부문과 운영부문을 통합하여 위탁하는 방안과 분리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통합형 위탁방안(1안)과 분리형 위탁방안(2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1. 통합형 위탁방안(1안)

- 통합형 위탁방안은 복합커뮤니티 청사관리와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관련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방안임
- 청사관리는 기계·전기 설비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보수 등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 취미, 문화, 교양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무, 그리고 시설대관 관리를 포함함
- 통합형 위탁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복컴 관리·운영을 담당할 조직을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도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복컴관리팀(가칭)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사관리본부(가칭)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형 위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업무(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광과, 노인보건장애인과 등)를 하나의 부서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통합형 위탁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들 수 있음

- 단점으로는 현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참여가 어려워져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대규모 운영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상승 등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표 4-5〉 통합형 위탁방안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여러 복컴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성 강화 • 이용료 현실화 및 수익률 제고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횟수 확대)를 통한 시의 재정부담 완화 •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역량 제고	• 이용료 현실화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 수익성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증가 • 주민자치위원회·노인회 등 현 운영단체의 반발 및 인근 학원과의 갈등 야기 •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저해 •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부족

2. 분리형 위탁방안(2안)

- 분리형 위탁방안은 복합커뮤니티의 청사관리와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방안임
 - 이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이 기계·전기 설비관리 및 시설물 개보수, 시설대관 등 청사 유지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분리형 위탁방안을 추진할 경우, 권역별로 통합 복컴관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나, 운영부분의 제외로 인력채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음
 - 복컴 시설유지관리 업무는 복컴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중심 복컴에 1개 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복컴 시설 유지·관리 인력 3~6명만 중심 복컴에 배치하고 권역 내 나머지 복컴을 통합 관리하도록 함
- 다만, 보람수영장, 아름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은 복컴 위탁관리와 분리하여 개별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분리형 위탁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비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증가, 관리와 운영주체 간 갈등 발생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표 4-6> 분리형 위탁방안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시설운영에 주민참여 가능 • 시설의 통합관리를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 시의 재정부담 증가 • 관리·운영주체 간 갈등 발생 증가 • 관리·운영주체 간의 의견 조정 어려움

3. 평가기준에 기초한 방안 선택

- 앞에서 언급한 통합형과 분리형 중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개별 방안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형과 분리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복컴 운영의 수익성, 효율성, 전문성, 민주성, 대응성, 주민만족도와 특수성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함
 - 수익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경상경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입과 비교된 산출의 비율로 정해지며, 그 비율의 값이 커질수록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여기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 전문성은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 경험 등을 갖추고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민주성은 시민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통합성보다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임

- 대응성은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려되었음
 - 주민만족도는 실제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나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료의 증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임
 - 특수성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운영의 기준이 되는 수익성, 효율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형 위탁이 분리형 위탁보다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시설로 설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강황선 외, 2009)에 따르면 복컴은 공공성은 중간 정도이고, 수익가능성은 낮은 지역형 편익제공 시설로 시설 관리·운영 원가 대비 사용료의 수익자 부담비율을 20%로 제시하였음
 - 이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민 자치프로그램도 공공성이 강해 수강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형 위탁 방안의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4-7> 시설별 분류

대 수익 가능성 소	C			수익형 시설
	B		스포츠 시설 광역형 편익제공 시설	준수익형 시설
	A	복지시설	지역형 편익제공 시설	
		①	②	③
		대	공공성 정도	소

* 각 시설에 대한 특별한 사양(예: 관객석이 있는 경기장, 음향시설 등)이 있는 경우 소요조정을 행해야 함
 자료: 강황선 외.(2009).

<표 4-8> 정부와 수익자의 부담비율 설정

대 수익 가능성 소	C	정 부 70% 수익자 30%	정 부 30% 수익자 70%	정 부 0% 수익자 100%
	B	정 부 80% 수익자 20%	정 부 50% 수익자 50%	정 부 30% 수익자 70%
	A	정 부 100% 수익자 0%	정 부 80% 수익자 20%	정 부 70% 수익자 30%
		①	②	③
		대	공공성 정도	소

자료: 강황선 외.(2009).

- 또한, 마을자치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 정립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공동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성, 대응성,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한 기준이 중시되어야 함

- 특히, 프로그램 운영은 복컴의 건립 목적상 지역공동체와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수업료를 받고 사설학원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어 동종 업계 반발 및 마찰이 우려됨
-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간 갈등 발생은 복컴 관리·운영위원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한 해결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4-9> 통합형과 분리형의 특징 비교

기준		통합형(1안)	분리형(2안)
수익성	시설관리	×	×
	프로그램 운영	○	×
효율성	시설관리	○	○
	프로그램 운영	△	×
전문성	시설관리	○	○
	프로그램 운영	×	△
민주성(참여)		△	○
대응성		×	△
주민만족도(이용료 등)		×	○
특수성		×	○

주: ○ 높음, △ 보통, ×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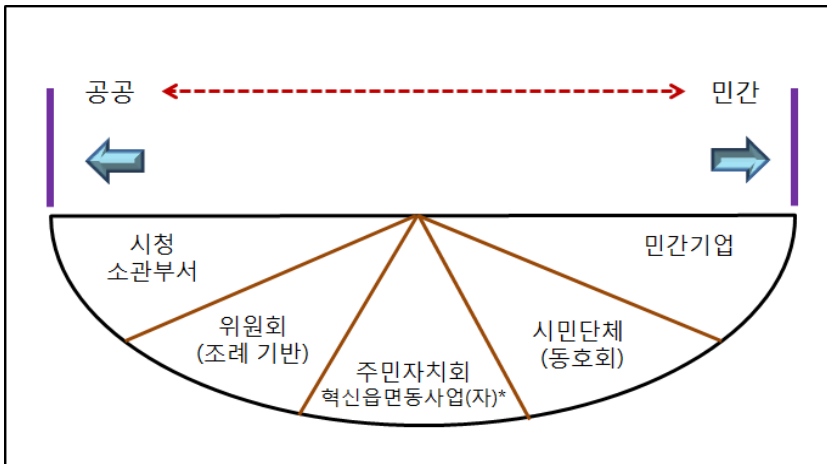
- 앞에서의 살펴본 기준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방식은 분리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관리적인(하드웨어) 측면과 운영적인(소프트웨어) 측면을 분리하여 최적의 관리·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관리와 대관은 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결정은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로 활성화하여 세종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운영되어야 함

제4절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방안

1. 프로그램 운영주체

- 복합커뮤니티 관리방식을 분리형으로 정하는 경우 시설관리부문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새로이 검토되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편임

<그림 4-1>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스펙트럼



* 혁신읍면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 운영주체의 대안으로는 우선 소관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들 수 있음. 이는 복합 입주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며, 현재의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함

- 각종 위원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범운영 중인 주민 협의체로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기능 이외에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음
 - 사무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관장 범위가 넓으나 아직까지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여 공식화의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시민단체는 지역에 따라 설립목적, 단체의 수, 규모, 조직화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공익 목적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편임
 - 특히, 복컴 이용과 관련해서는 동호회 중심의 단체 구성이 많은 편이어서 스포츠 종류별로 동호회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하는 방식으로 위탁사업 운영을 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2. 운영주체별 관리방식 검토

가. 단독형

- 관리방식의 구분은 운영주체가 단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다른 주체들도 참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단독형과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형은 어떤 운영주체가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여 단일 기관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어서 단지 어느 기업이 수행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단독형은 한계를 지니게 됨

나. 혼합형

- 혼합형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주체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거나 문화, 교양, 스포츠 등에 관한 시민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임
- 혼합형의 수행방식은 우선적으로 몇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별로 규모, 조직화의 정도, 운영 경험의 정도가 너무나 달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복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영역별로 서로 다른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에도 복컴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대한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프로그램 영역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복컴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주체들도 각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분야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방식 중에서 혼합형의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혼합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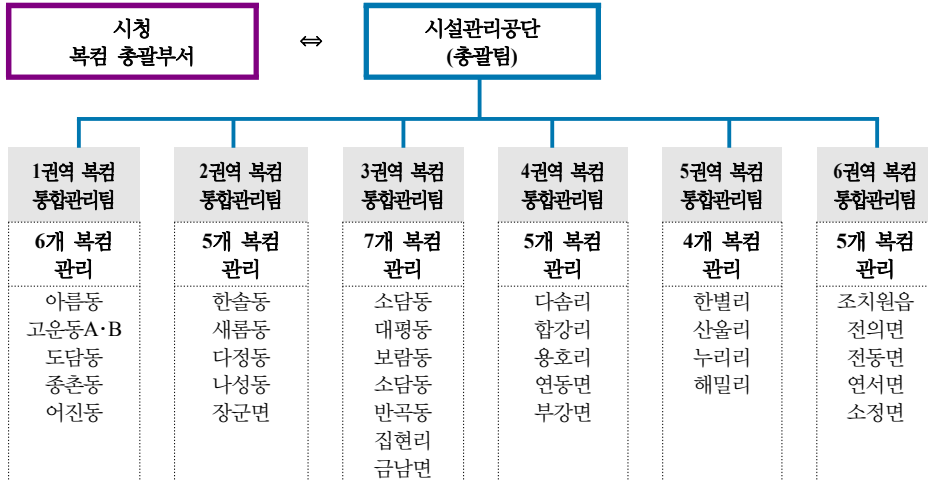
제5절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1. 조직체계 구상(안)

- 우선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사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설, 설비 등의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에 유리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분석이 필요함
-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시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계·전기 설비관리 및 시설물 개보수, 시설대관 등을 총괄 전담하는 팀이 필요함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듯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통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총 32개의 복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시설관리공단 내에 총괄팀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1개 현장팀을 운영하는 것이 관리나 예산·인력 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적임
 - 복컴과 규모가 비슷한 정부합동청사 고양지소(연면적 12,560㎡, 관리 직원 4명)의 경우 1인당 관리면적이 3,140㎡정도임
 - 고양지소 보다 규모가 50배 이상 큰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1·2·3구역별 통합 관리를 통하여 1인당 관리면적이 7,864㎡정도로(연면적 629,145㎡/관리직원 80명 정도) 인력 운영면에서 2.5배 정도 효율이 높음
 - 권역별로 복컴 연면적을 55,000㎡ ~ 80,000㎡ 정도(1권역 70,582㎡ 정도³⁰⁾)로 예상할 때 정부세종청사 1인당 관리면적 기준을 준용하면 권역별로 7~10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0) 권역별 면적 산정 시 별도 관리하는 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면적은 제외

<그림 4-2> 복کم 시설관리 조직체계(안)



※ 파란색 표시된 복کم은 중심 복کم으로 권역별 복کم 통합관리팀 사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표 4-10> 복کم 관리 조직 역할 및 임무(안)

구 분	인력규모	임무 및 역할	비고
시청 복کم 총괄부서	2명 정도	예산·결산(대행사업비), 공단 위탁 관련 업무 처리, 복کم 이용시스템 구축 등	
시설관리공단 총괄팀	7명 정도	권역별 시설관리 계획 수립, 권역별 예산·인력 등 총괄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시청 관련 업무 추진	
권역별 복کم 통합 관리팀 (공단 직원)	7~10명 정도	시설관리(건축, 기계, 전기, 승강기, 주차장, 청소, 경비 등) 용역 통합 발주 및 업체 관리, 하자접수(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품 구매, 비품 관리, 시설대관 업무 등	

※ 상기 조직 및 인력 규모는 예시이며, 별도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필요

- 시설관리(건축·기계·전기·승강기·주차장·경비·청소 등) 용역은 권역별 통합 발주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시설개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관리 상주(당직) 용역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 하자접수와 대관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하자신고, 시설대관 예약부터 수납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복کم 시설 이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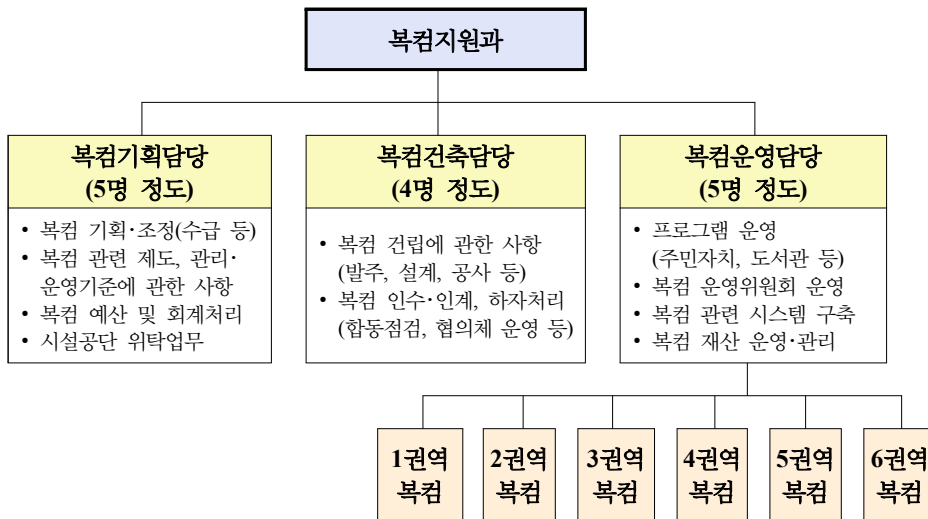
- 이와 별도로 보람수영장, 아름스포츠센터 등 수익성이 높은 체육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와 별개로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독자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분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에서 각각 관리 주체를 달리하여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은 가능한 한 시민들과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특정 연령대,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내의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회의실 사용 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다양한 단체, 클럽, 지역공동체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2. 시청 총괄부서 설치(안)

-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으며,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센터 개청 이전까지의 업무는 행정도시지원과 공공건축추진단에서 담당하는 반면, 개청 이후의 업무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센터 개청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업무수행 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인수·인계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시청에 부서(과)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복검지원과’(가칭)를 설치하여 모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함
- 복검지원과(가칭)는 기획·조정, 관리·운영기준 수립, 시설관리·운영, 설계, 공사, 위탁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그림 4-3> 시청 복검 총괄부서 조직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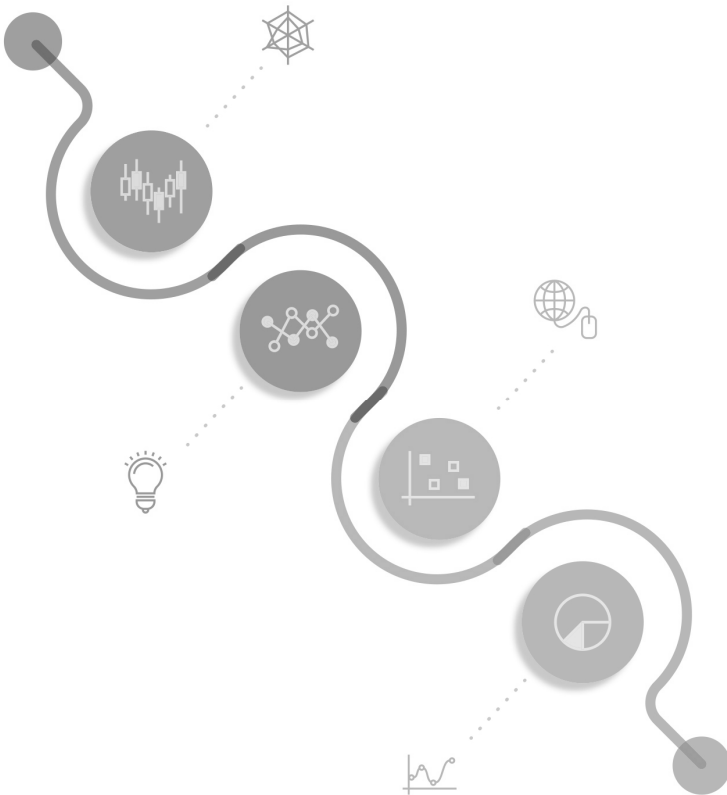
제5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 및 설치 조례(안)

제1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제2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조례(안)

제3절 사용료 산정의 근거와 방향



제 5 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 및 설치 조례(안)

제1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음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권 보장의 수준이 다르며, 자치제도 운영의 경험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우리나라 자치제도 모델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도 주민자치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하나의 좌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컴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아래에서는 주민참여형 복합커뮤니티의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1. 주민참여형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복컴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관련 수요조사 참여

- 복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보다 2-3개월 이전에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조사는 의견수렴의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수준은 낮은 편이나 복컴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 취미,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사회경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표 5-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예시)

구 분		프로그램 예시
소통/ 주민 화합	주민축제	- 재능한마당, 추석맞이 송편빚기, 옷놀이, 경로잔치, 벚꽃축제, 주민 음악회, 송년회 단합행사, 동네친구 만들기, 어린이 물놀이 행사, 주민의 밤, 국수데이 등
	소통 및 의견나누기	- 커뮤니티 이해, 북카페, 커뮤니티 퍼실리테이션, 소통게시판, 주민 간담회, 층간소음줄이기 캠페인 등
문화	품앗이 및 문화교류	- 반찬나눔 품앗이, 먹거리 장터, 대추열매 공유, 함께 먹어요 등
	소식지 및 홈페이지	-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 창업	취미교실	- 도예탐방, 장구/타악 교실, 풍선아트, 주민노래교실, 사찰음식만들기, 사진교실, 수공예, 한국무용, 요리교실, 켈트, 우크렐레, 어린이 뮤지컬, 냅킨아트, 클레이공예, 미술심리, 아트페이퍼, 상상공작소, 창의력 미술교실, 군인자 등
	교양	- 시낭송, 생활풍수강좌, 독서토론, 문학교실, 한문,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초급, 팝송영어, 신문활용교육 등
	기타	- 수지침, 재테크, 장애인 인권교실, 어르신교실, 스마트폰어플강좌, 성폭력 예방교실, 미디어 교실, 함께 배워요., 왕초보컴퓨터(초/중급), 생활 한의학 등
	주부교육	- 신화의 세계강좌, 국제도서전 참관, 주부영어교실 등
	부업 및 창업	- 바리스타, 캘리그래피, 사회적 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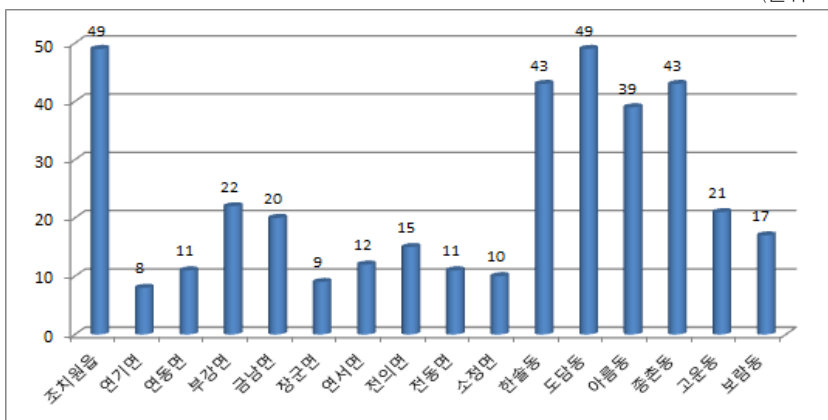
출처 : 행복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컴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보고서(행복청, '16.12.)

- 수요조사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강좌의 개설을 최소화하고, 강좌 개설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수요조사는 시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수준은 낮은 편이며, 수요조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시민들의 의견 제시가 부족한 경우,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인이나 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동,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상반기에 16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는 총 379개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수는 12개(약 3.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성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2017년 상반기)

(단위 : 개)



- 개설·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되는 공간(강의실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공간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특정 연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참여 계층의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운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칭)’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함
 -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의 제한 검토
 - 주민 인구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읍·면·동별로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공통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확대 모색
 - 이용시간을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대로 구분하여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현재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에 ‘복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하나의 분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참여

-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만족도조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그림 5-2> 참조)

<그림 5-2> 복컴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안내(예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 2017. 0. 0.(월) ~ 0.(금)

● 설문 참여 방법

① 『컴퓨터』로 설문 참여
- 포털 사이트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검색

② 『스마트폰』으로 설문 참여
-  스마트폰으로 좌측 QR 코드를 스캔

③ 『설문지』로 설문 참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0층 안내데스크 비치 및 강의실 배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센터 0층 접수창구에 「정형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프로그램 운영, 강좌의 내용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일반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운영 적절성 인식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별 만족도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만족도
 -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참석 여부
 -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상의 문제점
 -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관련 개선사항
 -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민참여 방안 등
- 만족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해야 함
- 만족도조사 결과는 익년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를 복검별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 시민들의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2. 주민참여형 복검시설 관리 및 운영

가. 시설운영에 자원봉사자 중심의 참여

- 동 주민센터 직원만으로 전체 복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로 체육관, 알파룸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시민참여 방안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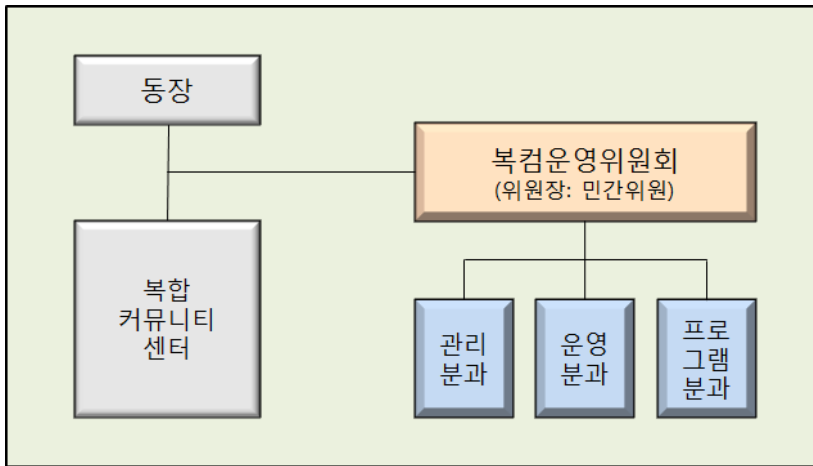
- 이러한 참여방식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방안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행사 지원 등과 같은 경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
- 이러한 참여방식은 참여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원봉사자 중심의 참여는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앞으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일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풀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은 현재보다는 확대되어야 함

나. 민간위원 중심의 복컴 관련 상설위원회 구성·운영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규모와 수를 고려할 때,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자들이 동 주민센터 직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주민참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복컴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컴운영위원회는 동장 소속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복컴운영위원회 산하에 복컴의 관리분과, 운영을 담당하는 분과, 그리고 프로그램분과를 설치·운영하도록 함(<그림 5-3> 참조)
 - 관리분과는 주로 복컴 시설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이나 불만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함

- 운영분과는 복컴의 운영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및 정비 등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프로그램분과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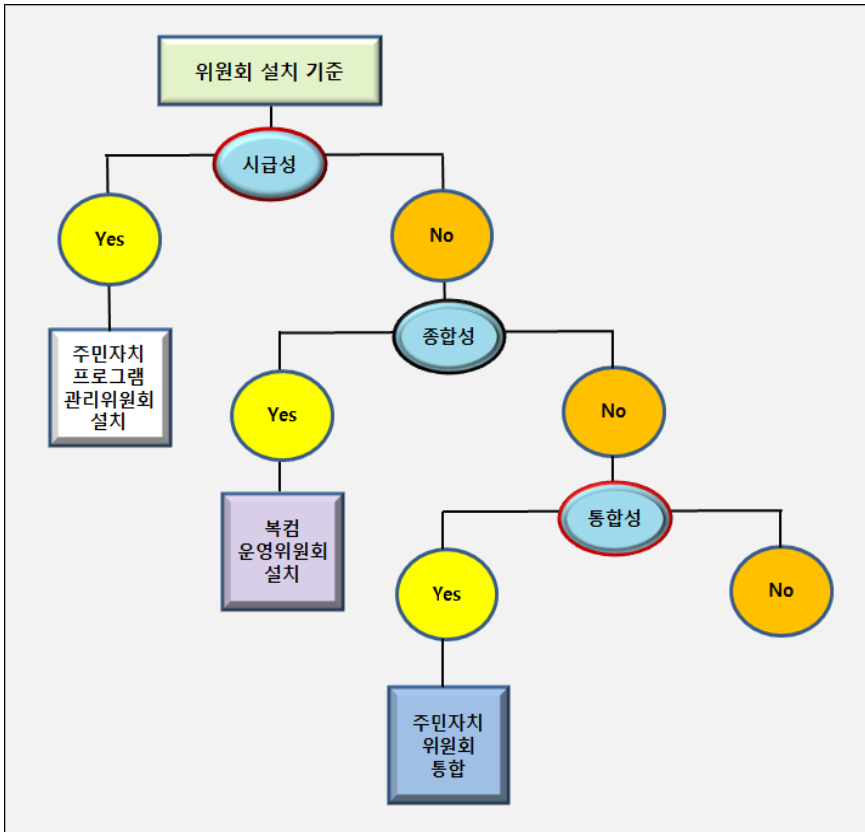
<그림 5-3> 복컴운영위원회 구성체계(안)



- 복컴운영위원회를 통한 참여는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지속성을 지니게 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개별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이용자들의 참여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대표성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참여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주요 역할은 정보 제공이나 제시된 안건의 심의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음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적으로 시급성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임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종합성 기준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소속된 분과로 몇 개의 분과를 설치하게 되며, 프로그램분과도 하위 분과 중의 하나로 두게 됨
- 통합성 기준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함을 의미함
 -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에 법적 토대에 기초하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림 5-4> 관련 위원회 설치의 기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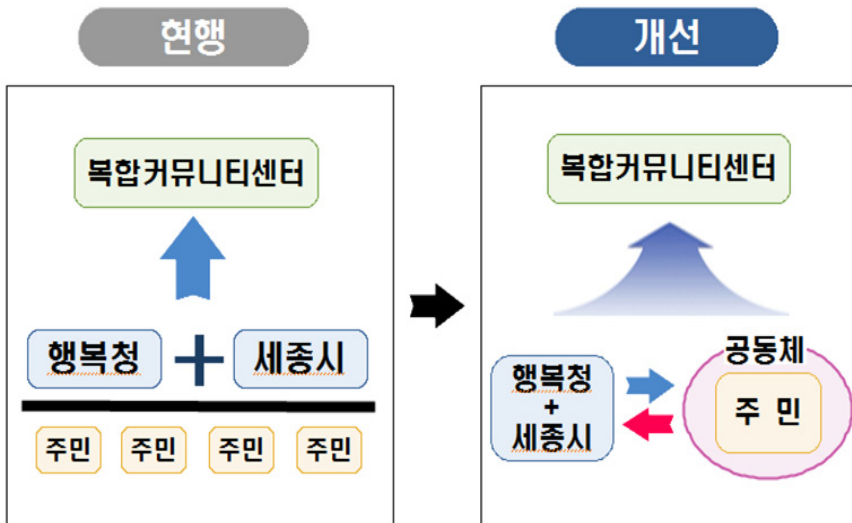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일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함

3.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전(全)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의 입안에서부터 디자인 공모 및 협의, 그리고 기획, 관리·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축과 관리는 주로 행복청과 세종시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주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행정과 시민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구조임
 - 따라서 향후에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입안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면, 비영리조직,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구상,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함

<그림 5-5> 복컴 프로세스 전 과정에 주민참여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체별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들을 개관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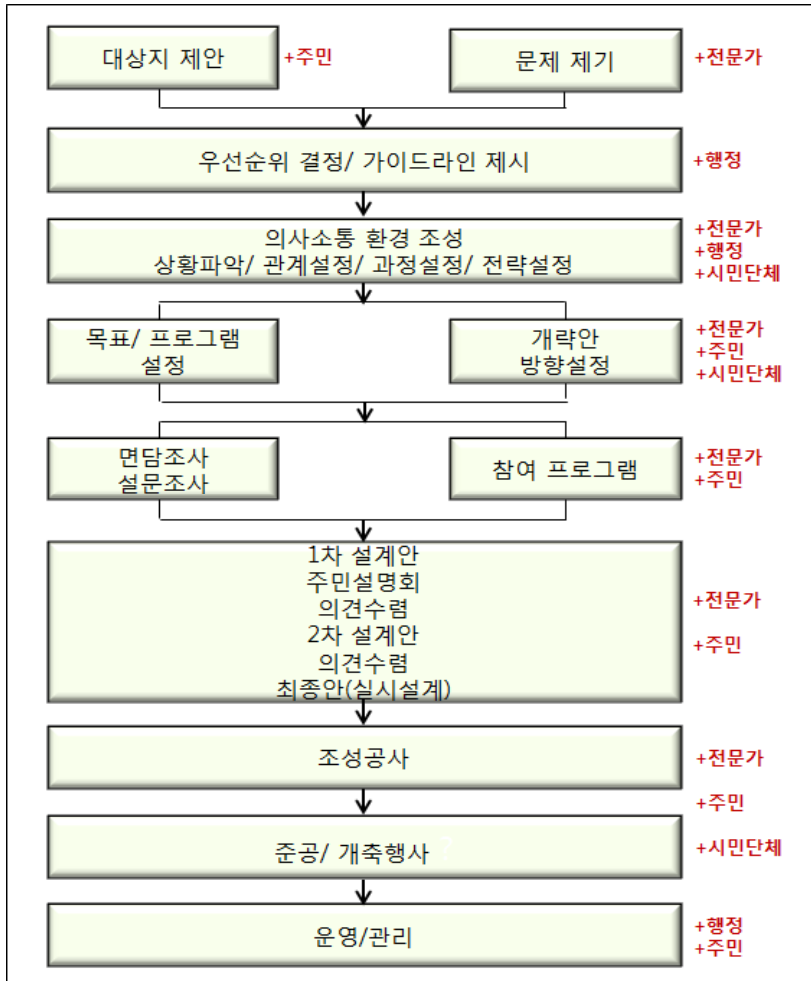
<표 5-2> 참여주체의 역할

참여주체	주요 역할
주민	• 조성과정의 자발적 참여 •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과 규율 준수
행정	• 참여자 양성, 참여 유도 • 네트워크 구축 • 가이드라인 제시 • 프로그램 제공 • 재정적인 지원
전문가	• 전문적 지원 • 과정별 전문성 확보
시민단체	• 비영리조직 • 주민참여 지원 • 전문가풀 구성 • 주민-행정-전문가 간의 가교 역할
후원기업	• 일부 재정적 지원 • 일부 시공 참여(사회 공헌)

출처 : 허윤선·임승빈(2014: 140).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각 단계에 따라서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도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복합커뮤니티 조성의 단계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주민들이 각 단계별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5-6> 참여형 복합커뮤니티 추진단계 및 단계별 참여자



출처 : 허윤선·임승빈(2014), 일부 수정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며,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3>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방안

분야	주민참여 방안
계획단계 및 과정	• 생활권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여 계획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이해와 합의 도출 도모 • 사업의 각 단계별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모임 및 단체의 활성화	•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 등을 이용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유도 • 주민협의회, 비영리단체, 상인협의회 등의 활성화 • 주민참여를 전제로 사업과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 추구
거주자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	• 이웃과 취미나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시설 • 커뮤니티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인 참여기법	•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시적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 공청회, 포럼, 워크숍, 리플렛, 소식지, 설문, 거리조사, 캠페인, 면접 등 활용 • 계획 수립 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 • 직접 주민이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기구 필요
주민자치 센터	•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 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역할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시간대 및 요일 세분화 •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의 거점이 되도록 함 •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 필요
제도 및 규정	• 주민참여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신뢰할만한 중재자 필요 • 사업 추진 시 일반 주민의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교육하는 기구 필요

출처 : 이지숙(2008: 538), 일부 수정.

제2절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조례(안)

1. 파주시와 구리시의 조례 비교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와 파주 행복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
- 두 자치단체 간 유사점과 차이점은 ○, △, ×로 구분하여 살펴봄
 - ○는 유사함, △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음, ×는 비교되는 조례에 관련 또는 유사 조항이 없음을 의미함
- 가장 큰 차이로는 구리시에는 제3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파주시에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5-4> 구리시와 파주시의 조례 비교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기본시설에 구리시는 해당 시설만을 포함하지만, 파주시는 매점, 식당, 기계실, 부설주차장 또한 포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보건지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방·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직원	×		제3조(직원)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명칭 및 위치	×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문산행복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운정행복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사용 허가	△		제4조(사용허가)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운영 관리	×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사용 제한	○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복지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허가 우선 순위	△	구리시는 관외단체 제외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순회 전시회(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		제7조(사용료)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사용료 면제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	파주시가 좀더 세세하게 그 범위를 지정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 4.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자 책임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정복지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사무실 임차 사용	△	파주시는 매점 포함	제11조(사무실의 임차 사용) ① 임차료 산정을 위한 건물 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임차할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 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주차 시간 산정 및 주차 요금	×		제12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주차권 판매	×		제13조(주차권의 판매)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인근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권의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3과 같다.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주차 요금 징수	×		제14조(주차요금 징수) ① 시장은 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 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액권은 천재지변, 장기요양, 국외이주 등 주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 요금의 감면	×		제1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부설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주차요금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자동차 나.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구리시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한 자동차 마. 공연관계자의 자동차 바. 교육 강사의 자동차. 다만, 교육 강의를 있는 날로 한정한다. 사.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사람의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소유차량으로 수상일부터 1년 2.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차량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바.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운전 차량 3. 주차요금 100분의 20 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4. 2천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감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그 밖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 배상 책임	×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용자 준수 사항	×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차 거부	×		제18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무단 방치 자동차 의 조치	×		제19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 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	△	파주시에는 기한이 3년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구리시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납부금액 2. 기본시설·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시설 사용료 및 부가세 납부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5.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5.2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계약을 5년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탁의 취소	△	파주시에는 위탁의 취소는 따로 조항을 두지 않고 위탁관리에 포함되어 있음	제2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 금지	○	구리시 파주시 모두 조항으로 양도금지가 없음	제22조(양도금지) <삭제 2015.5.20.>	

조항	구분	설명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행복센터
준용	△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요금 징수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시행 규칙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파주시 사용료³¹⁾

<표 5-5> 파주시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기준시간		평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2:00~18: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2:00~18: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출처: [별표 1] <개정 2013.2.22.>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적용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

<표 5-6> 파주시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 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재생기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테이프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 가산	
	소공연장				
	전시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출처: [별표 1] <개정 2013.2.22.>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31) [별표 1] <개정 2013.2.22.>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나. 구리시 사용료³²⁾

<표 5-7> 구리시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장소		시간별	기본 1시간	추가 1시간마다	비고
공 연 장	평일		50,000	15,000	
	토요일·공휴일		70,000	20,000	
다목적실	평일		15,000	5,000	
	토요일·공휴일		20,000	6,000	
전 시 실	1회(1일)		10,000	초과 1시간 이상은 1일로 봄.	

*출처: [별표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7조 관련)

*비고 : 1. 기본사용 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함

2. 전시설 사용 시간은 행정복지센터 1일 운영 시간으로 함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4. 초과 사용료 : 신청 시간 초과 사용료는 기본 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표 5-8> 파주시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항목	기준	사용료	비고
조 명	무대조명	시간당	20,000	
음 향	무대음향	1회	10,000	
악 기	피아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난방	공 연 장	시간당	10,000	
	다목적실	시간당	8,000	
	전시설	1일	10,000	

*출처: [별표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7조 관련)

32) [별표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7조 관련)

2.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 설치 조례(안)

- 타 자치단체 사례의 분석에 나타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사용허가, 운영관리, 사용제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사용자의 책임, 위탁운영,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안)은 이와 같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합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
- 조례 제정 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음
 - 시설 유형에 따른 사용료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 이용이 평일인지 아니면 주말(공휴일 포함)인지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용시간이 오전, 오후, 저녁 중 어느 시간대인지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게 산정되고 있음
- 시설에 배치된 장비 사용의 경우는 대부분 1회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시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음
- 사용료 선정 시 최소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선정하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대시설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이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대부분이 최신 시설이라는 점과 주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타 조례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과 유사성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음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와의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조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 2017.○○.○○ 조례 제○○○○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도서관, 문화의 집,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알파룸, 수영장, 119안전센터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알파룸,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러한 과정에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복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제4조(사용허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사무실의 임차 사용) ① 임차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임차할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법령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납부금액
2. 기본시설·부대시설 등의 시설 사용료 및 부가세 납부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계약을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절 사용료 산정의 근거와 방향

1. 사용료 산정의 필요성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서비스도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음.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복컴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와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을 대관료, 사용료 등으로만 관리·운영할 수 없으며, 턱없이 부족한 운영경비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적정 사용료의 설정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 간 부담의 형평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의 이용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관일, 개관시간, 적정 인원의 배치, 업무프로세스 및 서비스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사용료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적정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요율에 대한 P(계획)-D(실시)-C(확인)-A(검토) 사이클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복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전제 하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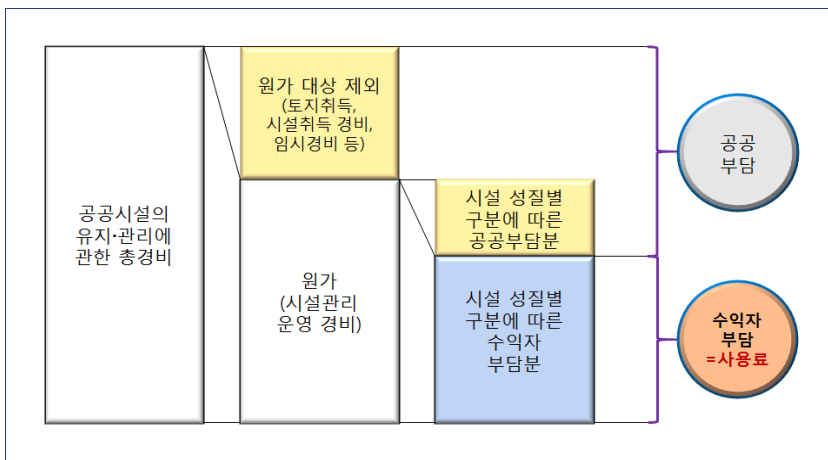
2.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

가. 사용료의 개념 및 범위

- 사용료는 공공시설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전용사용료와 시설물 사용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17)
 - 전용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의미함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 소비자가 점용 또는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그 반대급부로 수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을 의미함
- 사용료의 부과는 공공시설물의 사용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시설물 전용 혹은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17)
 - 사용료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서비스의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주민들에게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한정성의 의미를 가짐
 - 이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은 일차적으로 사용자들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때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설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성·공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시민과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함

- 공공시설과 관련된 경비에는 시설 건설비(감가상각비 포함) 및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다양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료 기준을 설정할 때는 수익자부담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비용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5-7> 사용료 설정기준 개념 및 범위



출처: 静岡市(2013), 일부 수정.

나. 사용료 부과와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5-9> 사용료 징수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공공시설 사용료 부담방식의 비교

가. 일본의 사례

1) 시즈오카시(静岡市) 사례

-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도로나 공원, 복지시설에서부터 민간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온천이나 스포츠센터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함
-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설정할 때, 모든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각 시설의 서비스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대해 공공부담과 사용자부담의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즈오카시(静岡市)의 경우, 공공과 수익자 부담율 기준과 관련된 기준을 크게 시설의 필수성(공적 필요성)과 시설의 수익가능성, 그리고 공공과 수익자의 부담비율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분류	I	II	III
시설 특성	민간기업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일정한 공익성으로 특정 수익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	시민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육을 보완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필수성	낮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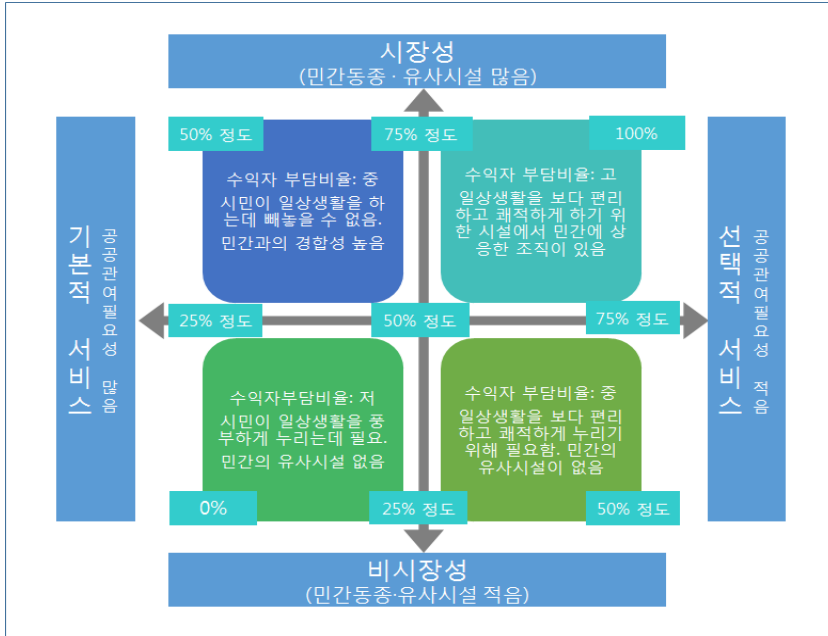
분류	수익성	시장성
A	수익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민간기업	낮음
B	수익성이 낮아서 시설의 사용료만으로는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시설	높음
C	상당한 수익성이 있어 시설의 사용료를 가지고 높은 관리·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	

		필요성		
		I 낮음	II	III 높음
시장성	높음	A 공공비용 50% 수익자 50%	공공비용 75% 수익자 25%	공공비용 100% 수익자 0%
	B	공공비용 25% 수익자 75%	공공비용 50% 수익자 50%	공공비용 75% 수익자 25%
	낮음	C 공공비용 0% 수익자 100%	공공비용 25% 수익자 75%	공공비용 50% 수익자 50%

2) 가와사키시(川崎市) 사례

- 시즈오카시와 마찬가지로 가와사키시 역시 공공성과 시장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공공과 수익자 간의 비율을 분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공공성을 서비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음
 - 보편성은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반면, 특수성은 시민들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 시설의 성격과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표준분담비율을 결정함
- 1차적으로 공공관여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음
 - 기본적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연령, 성별, 주소 등과는 상관없이 널리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
 - 선택적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시민생활에 활력이 생기거나, 여가활동의 선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른 것이 특징임
- 2차적으로 서비스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시장성과 비시장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시장성은 민간에서도 동종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함
 - 비시장성은 민간에서는 동종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 주로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을 반영하여 공공과 수익자가 분담해야 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과 수익자 간의 표준분담비율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5-8> 표준적인 수익자 부담비율



출처: 川崎市(2014).

나. 한국의 사례³³⁾

1) 선행연구의 부담비율 분석

- 이세구(2004)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수수료의 적정요율 산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수수료 종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각 수수료 종목의 적정요율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서비스를 ‘필수적·비수익적’, ‘선택적·비수익적’, ‘필수적·수익적’, 그리고 ‘선택적·수익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33) 한국의 사례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2017)의 보고서 pp. 71-75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수적·비수익적’ 서비스의 적정 원가보상률은 60%, ‘선택적·비수익적’ 서비스는 70%, ‘필수적·수익적’ 서비스는 90%, 그리고 ‘선택적·수익적’ 서비스는 100%로 제시하였음

○ 강황선·주운현(2009)은 공익성 여부, 민간경쟁 여부, 그리고 수익발생 정도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정 사용료 부담률을 제시하였음

- 공익성, 수익가능성 및 민간부분 경쟁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분류하고 공익성이 낮을 때, 수익발생정도가 높을 때, 그리고 민간경쟁이 높을 때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배정하였음
- 공익성이 높은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은 민간 부담률 0%, 민간에서 공급하는 가능성이 낮은 축구장, 야구장의 민간 부담률 20%, 민간과의 경쟁 수준이 높은 체육관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강좌의 민간 부담률 60%, 수익발생 수준이 높고 민간과의 경쟁도 높은 음식점, 문화강좌, 테니스장은 민간부담률 100%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표 5-13> 공공시설 사용료 부담비율 결정기준(예시)

기준		수익발생정도		
		저	중	고
공익성	경쟁	정부 80% 민간 20%	정부 60% 민간 40% (전시실)	정부 40% 민간 60%
	비경쟁	정부 100% 민간 0% (복지관 : 장애인, 노인)	정부 80% 민간 20%	정부 60% 민간 40%
비 공익성	경쟁	정부 60% 민간 40%	정부 40% 민간 60% (체육관, 저소득자관련)	정부 0% 민간 100% (문화강좌, 공연장, 회의실)
	비경쟁	정부 80% 민간 20% (축구장, 야구장, 학교운동장)	정부 60% 민간 40%	정부 20% 민간 80%

출처: 강황선, 주운현(2009: 200).

- 김광석 외(2013)는 대구광역시 각종 시설물의 적정사용료 산정에서의 시설물 유형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5-14> 시설유형별 정부-민간 비용부담 비율기준(안)

수익자부담	공공성	민간과의 경쟁	사용자 분담비율
고	공공성	경쟁	60%
고	공공성	비경쟁	40%
고	비공공성	경쟁	100%
고	비공공성	비경쟁	80%
중	공공성	경쟁	40%
중	공공성	비경쟁	20%
중	비공공성	경쟁	70%
중	비공공성	비경쟁	50%
저	공공성	경쟁	20%
저	공공성	비경쟁	0%
저	비공공성	경쟁	40%
저	비공공성	비경쟁	20%

출처: 김광석 외(2013: 158).

2) 인천광역시의 사례

- 최태림(2016)은 인천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설사용자의 분담비율은 제시하고 있음
- 생활체육, 실내경기장은 수익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선택적 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사용료 분담률은 80~100%임
 - 그러나 여성복지회관, 청소년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필수시설에 대한 사용료 분담률은 0~20%에 불과함

<표 5-15> 인천시 공공시설 사용료 분담비율(예시)

기준	수익발생정도		
	저	중	고
필수	0-20%	20-40%	40-60%
	여성복지회관, 소년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근로자문화회관 도서관, 하수처리시설	장사시설	공연시설 도매시설
선택	20-40%	40-60%	80-100%
	종합경기장 실외체육관	사격·양궁장 사이클·인라인경기장	생활체육, 테니스장 야구·축구장, 실내경기장

출처 : 최태림(2016: 33).

- 한국경제조사연구원(2017)이 수행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은 선택적 성향이 높은 시설로 분류하여 사용료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고 있음

<표 5-16> 인천시 체육시설별 사용료 분담비율(안)

유형	시설명	세부시설		사용료 부담률(%)	비고
체육시설	삼산 월드 체육관	전용사용료	실내체육관	100%	
			보조경기장	100%	
			축구장	50%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수영프로그램	80%	
			헬스장	60%	
			에어로빅	60%	
			댄스, 요가	80%	
			탁구	80%	
			어린이 축구	60%	
			문화강좌	40%	공익성
	100%	비공익성			
체육시설	열우물 경기장	전용사용료	테니스장	100%	
			스쿼시	100%	
			수영장	100%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수영프로그램	80%	
			헬스장	60%	
			GX휘트니스	60%	
			테니스, 스쿼시	100%	
				100%	

출처: 한국경제조사연구원(2017: 75).

4. 복컴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방향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평균 수지율과 원가보상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나 원칙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용료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급원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김종순, 2002)
 - 첫째, 사용료·수수료의 부과가 의도하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됨. 요금 수준이 공급원가보다 낮을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해지게 됨
 - 둘째,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주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주민들을 보조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 셋째, 세외수입 증가율을 둔화시켜 재정압박의 원인이 됨
- 복컴의 경우에도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복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설과 프로그램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비용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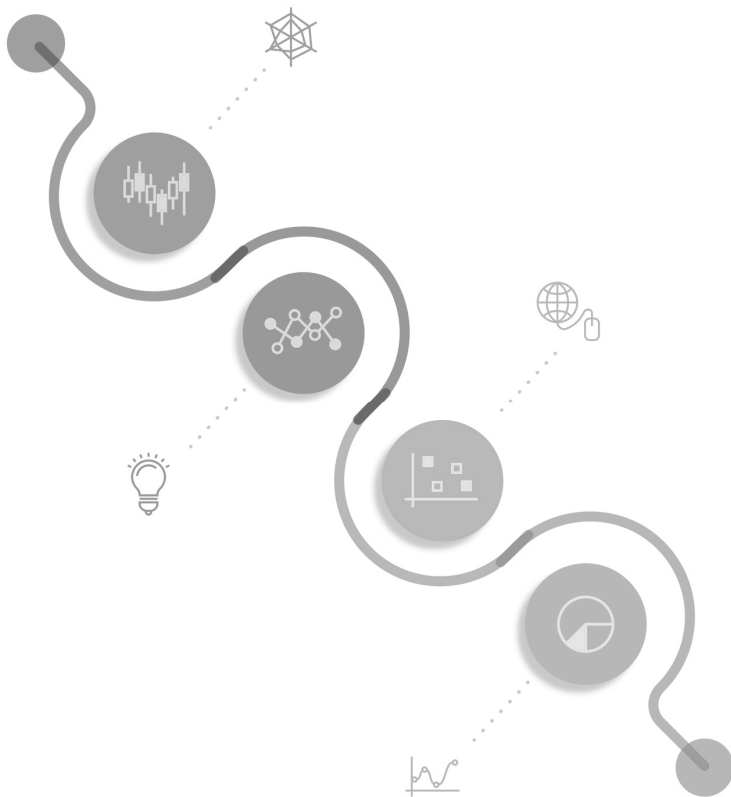
<표 5-17> 복컴의 관리·운영비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중촌동 (’16.4.개청)	평균
합 계	707,704 (100%)	869,929 (100%)	897,489 (100%)	794,609 (100%)	
운영비 소계	171,875 (24.3%)	209,443 (24.1%)	164,516 (18.3%)	154,286 (19.4%)	21.5%
인건비(도서관)	1,862	40,485	40,682	39,101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 등)	153,013	168,958	123,834	115,185	
관리비 소계	535,829 (75.7%)	660,486 (75.9%)	732,973 (81.7%)	640,323 (80.6%)	78.5%
공공요금	68,110	154,674	163,599	119,068	
청사 시설관리 용역 (청소, 경비, 승강기, 소방, 전기 등)	80,969	173,511	189,383	101,813	
청사 유지보수	302,428	222,315	249,175	175,370	
유지관리 물품(도서 포함)	84,322	109,986	130,816	244,072	

- 복컴별로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시설들이 입주하더라도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은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움
- 개별 복컴의 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료 수입을 통하여 비용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복컴별로 정확한 수지분석은 7개 복컴에 대한 '17년 결산이 나오는 시점에 가능하며, 시설별 사용료 산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등은 재정·회계분석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6장 결론



제 6 장

결 론

-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지속성 보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를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둠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담부서 부재와 운영인력 부족,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원 부족 문제, 제도적 기반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설치, 운영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운영재원의 확보,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복합커뮤니티의 관리방식은 1차적으로 직영,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으로 구분한 후,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관리방식의 평가기준을 제시한 후 방안의 선택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 관리방식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은 법적 적합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공공성, 자율성, 전문성, 능률성, 통제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2차적으로 공단에 위탁할 경우, 시설관리와 운영을 통합할 것인지 또는 분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통합형 위탁방안과 분리형 위탁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통합형과 분리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복컴 운영의 수익성, 효율성, 전문성, 민주성, 대응성, 주민 만족도, 특수성 등을 들 수 있음

- 3차적으로 분리형 위탁을 실시할 시에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단독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음
- 복합커뮤니티 관리방식을 분리형으로 정하는 경우 시설관리 부문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방식 중에서 혼합형의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혼합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의 참여, 복컴시설 관리 및 운영에의 참여, 복컴 추진 전 과정에의 참여로 구분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였음
- 복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의 참여는 복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인이나 노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동,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컴 시설관리 및 운영에의 참여 관점에서 볼 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복컴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복컴운영위원회는 동장 소속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복컴 추진 전 과정에의 참여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디자인 공모 및 협의, 그리고 기획, 관리·운영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각 단계에 따라서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성과 운영의 전(全)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 타 자치 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참고문헌】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16). 강남구 문화센터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 강동진 외(2008).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의미와 사례, 「도시정보」, No. 315(2008. 6), 3-17.
- 강황선·주운현(2009).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효율산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3): 179-205.
- 건설경제연구원(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용역보고서.
- 김경혜·마범순(2000).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연구원 2000-R-19, 서울.
- 김광석 외(2013). 「대구광역시 각종 시설물의 적정 사용료 산정」, 대구경북연구원.
- 김효주(2011). 「지방공공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급방식의 효율성 분석: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대한주택공사(2007).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연구」.
- 류숙원(201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서울: 감사연구원.
- 양우현 외. (2007)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여혜진 외(2016).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유금록(2009).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효율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23-38.
- 이성규(2014).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이용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 이지숙(2008).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에의 주민참여수법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533-540.
- 최태림(2016). 「인천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2016 정책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경제조사연구원(2017). 「인천시 공공시설물 유형별 사용료 산정 방안 모색 2」,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자치학회(2016). 「행복도시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방안 연구」, 서울.
- 허윤선·임승빈(2014).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프로젝트의 국내외 사례 연구. 「국토계획」, 49(2): 131-144.
- 행정자치부(200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서울: 행정자치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선진사례 조사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 조성 관련 연구보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a).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 연합뉴스 2013.08.23.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7일 준공. (검색일자: 2017.04.12.).
- 연합뉴스 2013.12.16.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8일 완공. (검색일자: 2017.04.11.).
- 川崎市(2014).使用料・手数料の設定基準.(http://www.city.kawasaki.jp/450/cmsfiles/contents/0000051/51502/20150715_sankou_siyoubi.pdf, 2017. 11. 10)
- 静岡市(2013). 公の施設に関する使用料の設定基準. (<http://www.city.shizuoka.jp/000136131.pdf>, 2017. 11. 10).